

2015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5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안(신구문 대조표)

분야	쪽	2014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I. 개요																														
1. 목적 및 연혁	3	나. 연혁 ○ '13.12 : 푸드뱅크 및 푸드 마켓 417개소 운영(전국 1개소, 광역 17개소, 기초 399개소)	나. 연혁 ○ '14.12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435개소 운영(.....기초 417개소)	통계 현행화																										
2. 사업 추진체계	4	2. 사업추진체계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푸드뱅크</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기초</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푸드뱅크 (271개소)</td><td style="text-align: center;">푸드마켓 (127개소)</td></tr> </table>	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 (271개소)	푸드마켓 (127개소)	2. 사업추진체계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푸드뱅크</td></tr>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기초</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푸드뱅크 (291소)</td><td style="text-align: center;">푸드마켓 (126개소)</td></tr> </table>	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 (291소)	푸드마켓 (126개소)	통계 현행화														
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 (271개소)	푸드마켓 (127개소)																													
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 (291소)	푸드마켓 (126개소)																													
3. 운영형태	6	가. 전국푸드뱅크 ○ 역할 - (생 략) - <신 설> 나. 광역푸드뱅크 ○ 역할 - (생 략) - <신 설>	가. 전국푸드뱅크 ○ 역할 - 현행과 같음 - 시·도 및 시·군·구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평가 나. 광역푸드뱅크 ○ 역할 - 현행과 같음 - 시·군·구 단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교육지원 및 관리	전달체계 역할 현행화																										
4. 주요 현황	7	가. 운영형태별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전국 푸드뱅크</th> <th>광역 푸드뱅크</th> <th>푸드뱅크</th> <th>푸드마켓</th> </tr> </thead> <tbody> <tr> <td>개소</td> <td>417</td> <td>1</td> <td>17</td> <td>271</td> <td>128</td> </tr> </tbody> </table> 나. 지역별(전국푸드뱅크 제외) '14년 지침 참고 다. 운영주체별 '14년 지침 참고	구분	계	전국 푸드뱅크	광역 푸드뱅크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소	417	1	17	271	128	가. 운영형태별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계</th> <th rowspan="2">전국 푸드뱅크</th> <th rowspan="2">광역 푸드뱅크</th> <th colspan="2">기 초</th> </tr> <tr> <th>푸드뱅크</th> <th>푸드마켓</th> </tr> </thead> <tbody> <tr> <td>개소</td> <td>435</td> <td>1</td> <td>17</td> <td>291</td> <td>126</td> </tr> </tbody> </table> 나. 지역별(전국푸드뱅크 제외) '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7쪽 참고 다. 운영주체별 '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7쪽 참고	구분	계	전국 푸드뱅크	광역 푸드뱅크	기 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소	435	1	17	291	126	통계 현행화
구분	계	전국 푸드뱅크	광역 푸드뱅크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소	417	1	17	271	128																									
구분	계	전국 푸드뱅크	광역 푸드뱅크	기 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소	435	1	17	291	126																									

분야	쪽	2014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II. 기부식품제공사업 권리				
1.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고제도	12	<p>② 당연신고(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2)</p> <p>- 신고대상 :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연신고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의무 부과)</p> <p>※ 임의신고 사업자가 매년 기부식품 장부가액 3억원 이상을 제공할 경우 당연신고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당연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p>	<p>② 당연신고(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2)</p> <p>- 3억원 이상식품에 한함인</p> <p>※ 전년도 제공한</p>	<p>신고기준 명확화</p> <p>변경 신고 기준 명확화</p>
	13	<p>라. 신고절차</p> <p>① (생략)</p> <p>(1) 정관(법인인 경우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근거가 포함된 내용)</p> <p>(2) 사업계획서(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및 기부식품 기부처 발굴 계획, 기부식품 이용자 현황 등을 포함)</p> <p>*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를 초과할 수 없음</p> <p>※ [붙임2] : 기부식품제공 사업계획서(예시)</p> <p>(3)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p> <p>(4) 시행령의 신고요건사실설비 기준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p> <p>※ 신청인이 동시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 첨부</p>	<p>라. 신고절차</p> <p>① (현행과 동일)</p> <p>- 사업계획서(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포함)</p> <p>*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를 초과할 수 없음</p> <p>※ [붙임2] : 기부식품제공 사업계획서(예시)</p>	<p>「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14.12.12 시행)</p>

분야	쪽	2014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② 담당공무원은 신고요건, 관련서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14	<p>마. 추가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략)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임의 신고사업자가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당연신고 요건을 갖춘 후 신규신고절차에 준하여 당연신고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조치 ○ <신 설> 	<p>마. 추가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임의 신고사업자의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당연신고사업자로 변경하도록 조치 ○ 신고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이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여 푸드뱅크(마켓)임을 명시 	<p>변경신고기준 명확화 및 현판 설치 안내</p>
2. 기부식품 이용자 권리	15	<p>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략) ○ (생 략) ○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실비를 받는 노인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p>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p>식품배분 금지 대상 명확화</p>
	16	<p>라.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법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략) ○ 신고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기부식품제공 사업자가 취급하는 기부식품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 푸드뱅크에서 전국단위 일괄 생산물배상 	<p>라.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법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푸드뱅크(마켓)에서 제공하는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사업자별 손해보험 가입 불필요)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기부식품제공 사업자에 한함 	<p>사업자별 손해 보험 가입 불필요 안내 등</p>

분야	쪽	2014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책임 보험에 가입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http://www.foodbank1377 공지사항 참조	
3.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19	라. 기부식품관리시스템(Foodbank Management System : FMS) 사용 ○ (생 략) <신 설>	라. 기부식품관리시스템(Foodbank Management System : FMS) 사용 ○ (현행과 동일) ※ [붙임 10] : 기부관리시스템(FMS) 사용 매뉴얼	기부관리 시스템(FMS) 사용 안내
4. 기부 식품의 관리	24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예방 - (생 략) <신 설>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예방 - (현행과 동일) ※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
		○ 식품사고 사후관리 - (생 략) - 시·군·구 담당자는 식품사고를 조사하여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기부식품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식품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 신속히 보고	○ 식품사고 사후관리 - (현행과 동일) -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변경
5.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인력관리	26	5.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인력관리	5.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인력관리 등	기타사항 추가
	27	○ 종사자 건강진단 - (생 략) <신 설>	○ 종사자 건강진단 - (현행과 동일) 다. 기타 사항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	복지할인 안내

분야	쪽	2014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p>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전기요금 감액) 가능</p> <p>- 복지할인 내용 : 사회복지시설(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기요금 20% 감액</p> <p>-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버지점 www.kepco.co.kr /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지사, 지점</p> <p>- 구비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전기요금영수증, 사회복지관련 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신고증</p> <p>※ [붙임 11]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안내</p>	
6.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의 철회·폐업	28	<p>나. 절차</p> <p>○ (생략)</p> <p>○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p> <p>(1) 철회 또는 폐업 의결서(법인인 경우)</p> <p>(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p> <p>(3) 신고필증</p>	<p>나. 절차</p> <p>○ (현행과 동일)</p> <p>○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p> <p>(1)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p> <p>(2) 신고필증</p> <p><삭제></p>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14.12.12 시행)
7.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29	<p>7.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p> <p><신설></p> <p>가. 국가 등의 지원(법 제7조)</p> <p>○ (생략)</p> <p>○ (생략)</p> <p>-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인건비, 운영장비,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경비 지원</p>	<p>7.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p> <p>※ [붙임 12]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 점검표(예시)</p> <p>가. 국가 등의 지원(법 제7조)</p> <p>○ (현행과 동일)</p> <p>○ (현행과 동일)</p> <p>-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인건비, 운영장비,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경비 지원</p>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 점검표 예시 안내 및 분권교부세 폐지 (2015.1.1. 시행)
	30	<p>마. 기부식품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p> <p>○ (생략)</p> <p>※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 가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임의신고는 당연신고 전환, 미신고는 당연신고 필요</p>	<p>마. 기부식품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p> <p>○ (현행과 동일)</p> <p>※ 전년도에 제공한 3억원 이상인.....</p>	신고기준 명확화

분야	쪽	2014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8.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33	<p>○ (생략)</p> <p>○ 세부기준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시행령 별표3)</p> <p><신설></p>	<p>○ (현행과 동일)</p> <p>○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3)</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p> <p>※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p> <p>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 가능</p> <p>※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개별기준</p> <p>(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rowspan="2">과태료</th>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rowspan="2">해당조항</th> <th colspan="3">과태료 금액</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위반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td> <td>법제14조 제1항 제1호</td> <td>300만원</td> <td>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td> <td>법 제14조 제1항 제1호</td> <td>100</td> <td>150</td> <td>300</td> </tr> <tr> <td>2.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아니한 자</td> <td>법제14조 제1항 제2호</td> <td></td> <td>나.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td> <td>법 제14조 제1항</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14조 제1항 제1호	300만원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100	150	300	2.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아니한 자	법제14조 제1항 제2호		나.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	법 제14조 제1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4.12.9 시행)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14조 제1항 제1호	300만원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100	150	300																								
2.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아니한 자	법제14조 제1항 제2호		나.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	법 제14조 제1항																											

분야	쪽	2014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5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개정사유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 1)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제2호	50	100	200	
		나.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자		150만원		50	100	150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제1항제2호	300만원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2호	300	300	300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법 제14조제1항제3호	3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3호	300	300	300	
III. 기타										
	36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붙임 9> 철회(폐업) 신고서 <신 설> <신 설> <신 설>			<붙임 1> 양식 수정 <붙임 4> 양식 수정 <붙임 9> 양식 수정 <붙임 10>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사용 매뉴얼 <붙임 11>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로 감면신청 <붙임 12>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14.12.12 시행) 및 안내사항 추가

I. 개요 / 1

II.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 9

1. 기부식품제공사업 신고제도	11
2. 기부식품 이용자 관리	15
3.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17
4. 기부식품의 관리	21
5.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인력관리 등	26
6.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의 철회·폐업	28
7.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29
8.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31

III. 기타 / 35

1. 붙임자료	37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38
<붙임 2> 기부식품제공사업 계획서(예시)	39
<붙임 3> 사업자 신고증	40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42
<붙임 5>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44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45
<붙임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	46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47
<붙임 9> 철회(폐업) 신고서	57
<붙임10>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58
<붙임11>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사용 매뉴얼	59
<붙임12>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102
2. 관련 법령	103
3.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주소록	120

I. 개 요

개요

1. 목적 및 연혁

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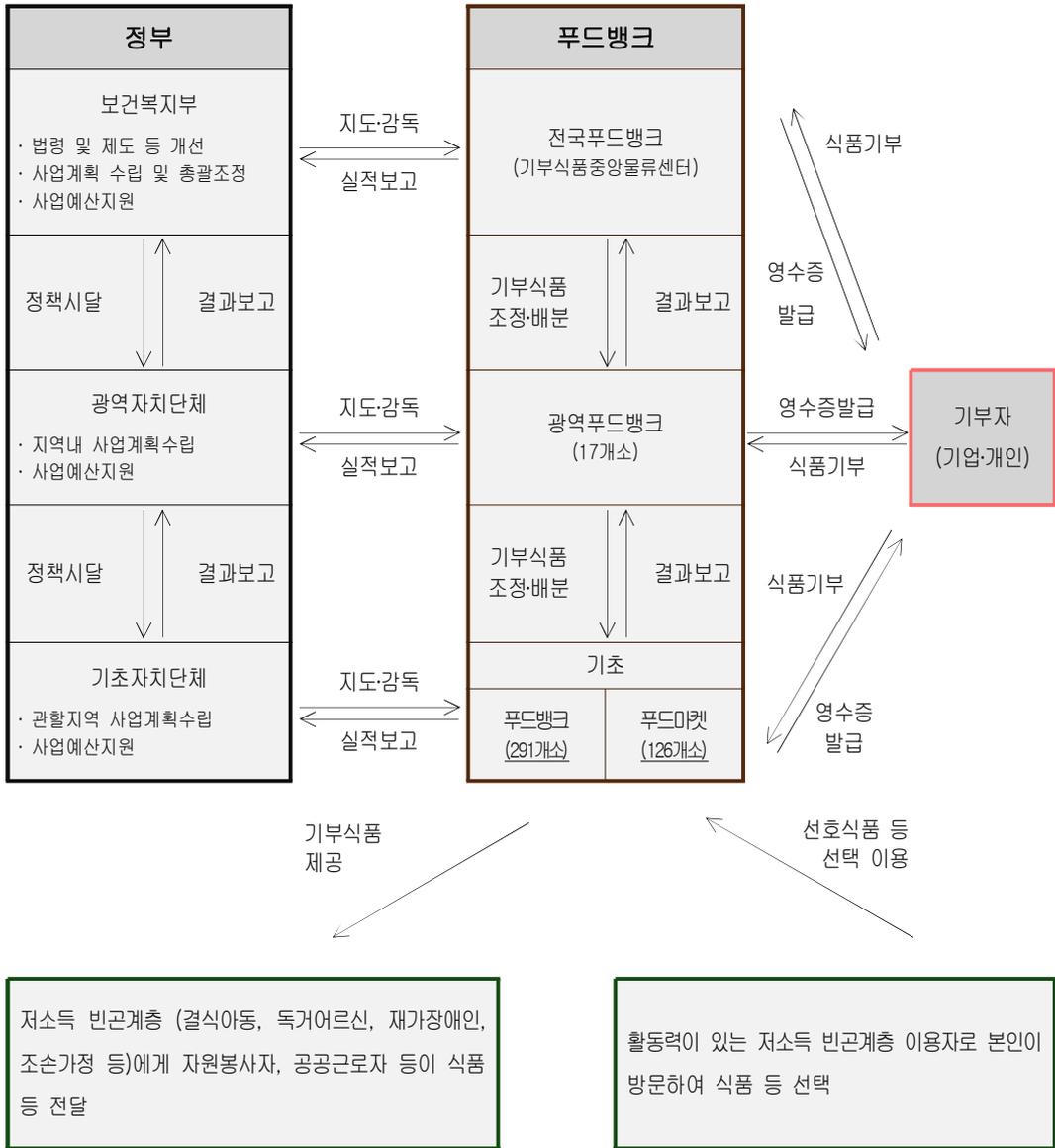
-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 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6. 9. 25 시행)에서 규정한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나. 연혁

- '98. 1 :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00. 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보건복지부)
- '01. 8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구축·운영(www.foodbank1377.org)
- '02. 7 : 「기부식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06. 3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06. 9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
- '09. 9 :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개소(대전 유성구 대정동 302-1)
- '14.12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435개소 운영
(전국 1개소, 광역 17개소, 기초 417개소)



2. 사업추진체계



3. 운영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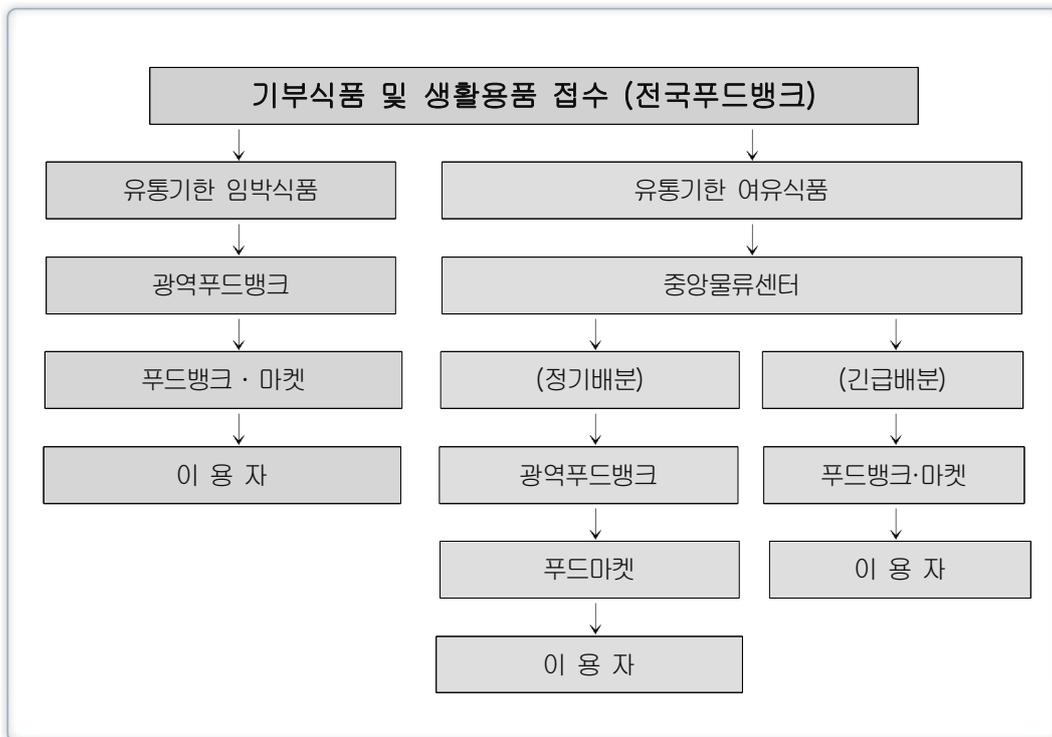
가. 전국푸드뱅크

○ 운영목적

- 식품나눔 문화 활성화, 기부식품의 전국적인 모집 및 배분, 사업프로그램의 개발 및 집행,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
-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00)

○ 역할

-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배분하고,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균형배분 실시





- 기부식품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 중앙물류센터,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운영
- 지역사회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국보험 가입
- 시·도 및 시·군·구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평가

나. 광역푸드뱅크

○ 운영목적

- 광역 단위의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분, 기초단위 사업장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국단위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사업자 중 광역푸드뱅크를 지정 또는 위탁 운영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미신고시 신고 필요

○ 역할

- 시·도 단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운영·관리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푸드뱅크와의 협력을 통한 기부식품 모집 및 균형 배분 지원
- 시·도 단위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용자 상담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관할 시·도 및 전국푸드뱅크)
- 시·군·구 단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교육지원 및 관리

다. 기초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마켓

- 지역 내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식품 모집·관리·배분
- 지역 내 기부식품 이용자 발굴·선정
- 연도별 사업계획(후원위원회 포함), 분기별 사업실적 및 예·결산 보고
- 전국푸드뱅크 및 광역푸드뱅크와의 협력

4. 주요 현황

가. 운영형태별

구분	계	전국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소	435	1	17	291	126

나. 지역별(전국푸드뱅크 제외)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광역푸드뱅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푸드뱅크	25	19	12	10	15	8	6	1	53	19	23	20	15	24	19	19	3	291
푸드마켓	32	12	7	14	3	8	2	1	17	1	5	6	5	3	4	4	2	126
계	58	32	20	25	19	17	9	3	71	21	29	27	21	28	24	24	6	434

다. 운영주체별(전국푸드뱅크 제외)

(단위 : 개소,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개인	기타 ¹⁾	계
개소	231	35	47	37	6	4	12	22	40	434
이용시설	193	33	39	27	6	4	12	22	34	370
생활시설	38	2	8	10	—	—	—	—	6	64
비율 (%)	53.2	8.1	10.8	8.5	1.4	0.9	2.8	5.0	9.3	100

1) 기타 : 비영리 민간단체 등

Ⅱ.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II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제공사업 신고제도

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

-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그 밖의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나. 기부식품 사업자(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2조)

- ①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 ②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고,
- ③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을 대상으로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함

※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20 미만은 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의 목적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 이외에 사업(대상자) 추가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

참고 : 법적 정의(법 제2조)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신고의 종류 및 요건

① 임의신고(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 신고대상 :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임의신고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할 수 있음
- 임의신고 요건 :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냉동 적재고, 온도계), 냉장·냉동시설 보유

임의 신고 시설과 설비 기준

1. 보관창고

- 가.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당연신고(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2)

- 신고대상 :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식품에 한함)인 사업자는 당연신고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의무 부과)
 - 당연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법 제14조 제1항)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
 - ※ 임의신고 사업자가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 3억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 당연신고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당연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고요건

- (1) 시설·설비 기준 : 16.5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냉동 적재고, 온도계), 1,000리터 이상의 냉장·냉동시설 보유
- (2) 인력기준 :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

당연신고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1. 보관창고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라. 신고절차

- ①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종류(임의신고, 당연신고)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춘 후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붙임 1] : 사업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장의 운영주체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

- 사업계획서(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포함]

*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를 초과할 수 없음

※ [붙임 2] : 기부식품제공 사업계획서(예시)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 [붙임 3] : 사업자 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운영형태(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푸드마켓의 경우 전용면적 유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고려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

마. 추가 조치사항

○ 사업자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 사업자 신고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신규 사업자는 동 사실을 해당 지역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전국푸드뱅크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임의신고사업자의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당연신고 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신고를 수리한 후 해당 사업자는 동 사항을 해당 지역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신속히 전국푸드뱅크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연신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사업자 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새로 교부(신고의 종류 : 임의→당연)하되, 사업자 신고증 뒷면에 최초 사업자 신고일 및 변경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신고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이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여 푸드뱅크(마켓)임을 명시

2. 기부식품 이용자 관리

가. 이용자 발굴

- 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파악하여 이용자를 적극 발굴
- 지방자치단체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기타 민간 복지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 개인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이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청서를 받아 보관
 - ※ [붙임 4] :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이용자 중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구성원수, 경제활동, 학비 등을 감안하여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제공
 - ※ 이용자 선정시 기부식품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저소득층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 가능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받는 노인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며,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제공 가능
- 운영주체의 바자회·행사 등 개최, 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기부식품 제공을 금지



다. 이용자 변경 : 기부식품 제공 기간 설정·운영

-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 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1년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 제공기간 설정 기준
 - (1) 1순위(1년) :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 (2) 2순위(9개월) : 차상위계층
 - (3) 3순위(6개월) : 기부식품 제공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 대상자

라.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법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 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사업자별 손해보험 가입 불필요)
 -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기부식품제공사업자에 한함
 -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http://www.foodbank1377.org> 공지사항 참조

3.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가. 기부식품 및 기부금품(후원금, 생활용품 등) 모집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식품 제조기업, 유통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국민 등의 기부 동참 유도
- 기부모집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모집활동 수행
- 식품기부처에 대한 관리를 통한 지속적 기부 유도

나. 영수증 발급

①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의 경우)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식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
 - ※ [붙임 5] :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기부식품 영수증은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처리(필요경비) 가능
- 기부식품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

참고 : 기부식품 영수증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제35조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제79조 1항은 지정기부금에 관한 사항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타 기업·개인의 경우)

-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개인이 아닌 자가 기부할 경우 또는 기부금품(후원금, 생활용품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운영주체(법인 등)가 발급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

※ [붙임 6] :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63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

- 금전 이외의 물품 기부시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로 영수증 발급(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참고> 영수증 발급 종류

기부자 \ 기부유형	음식료품	非 음식료품	후원금(현금)
음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개인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 운영주체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다. 기부식품 제공

-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해야 함
-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초과할 수 없음
 - ※ 직접경비: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 기부식품 제공시 기부식품의 특성(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식품의 보관 및 취식방법, 유통기한, 판매·교환 금지 등의 내용을 안내
 -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고지하고, 안전한 취식을 위한 별도의 관리를 수행
- 기부식품 제공시 이용자 가구원 수, 시설단체 현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라. 기부식품관리시스템(Foodbank Management System : FMS) 사용

- FMS는 식품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 [붙임 10] : 기부관리시스템(FMS) 사용 매뉴얼
- 사업자는 기부식품 모집, 제공시 관련 실적을 실시간으로 FMS에 입력하여야 함
※ FMS 입력으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에서 지역 내 사업실적을 제공받을 수 있음
※ ID, PASSWORD 별도 제공(전국푸드뱅크)

마.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법 제5조제1항)

-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 [붙임 7]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기부식품 모집시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

바. 기부금(후원금 등)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

- 운영주체(법인 등) 및 사업장의 기부금(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개설·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사업장이더라도 법인의 기부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사업장 고유의 기부금계좌를 두어야 함
 - * 사업장 명칭이 부기된 운영주체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여, 계좌의 용도를 사업장 기부금 모집·사용 전용으로 지정
- 운영주체(법인 등)의 대표와 사업장 대표는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기부금을 기부식품 사업장 운영비, 식품 구매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작성·보관

4. 기부식품의 관리

가. 기부식품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함
 -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붙임 8)을 준수
- 식품위생법상 위생 기준(식품위생법 제3조, 시행규칙 별표 1) 준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함

참고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 유통기한 관리 : 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참고〉 표 참조)

(1) 모집가능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되, 모집가능기한을 준수

※ 모집가능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육가공류는 최소 15일, 농산물의 경우 최소 7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2) 배분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모집가능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유통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유통기한이 적게 남아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우선 즉시 배분
- 제빵류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즉시 취식이 가능한 시설·단체나 개인에게 즉시 배분

<참고>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구 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유통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개인	사회복지 시설·단체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즉석 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핫반, 죽 등			
	냉동 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20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 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15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등	최소 7일 이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 개인이용자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사업장이라도 배분기한 내에 개인이용자에게 배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즉시 배분하거나, 즉시 배분할 수 있는 인근 기부식품제공사업장으로 이관

- 보관중인 기부식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분기한 내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분기한 이전이라도 관능검사 결과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기부식품은 폐기 조치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예방

- 시·군·구 담당 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생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여부 확인
※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 제공시 이용자가 유통기한 내 식품을 취식하도록 안내하고, 이용자의 보관창고(또는 냉장고) 등을 수시점검

○ 식품사고 사후관리

-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부식품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 시·군·구 담당자는 식품사고를 조사하여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기부식품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식품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신속히 보고

라. 민·형사상의 책임감면(법 제8조)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짐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참고 : 위해식품 등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참고 : 형법상 형의 감경·면제 가능 조항

-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인력관리 등

가. 인력 확보

- 기부식품 사업자는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전담인력, 보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다만, 당연신고 사업자의 경우 전담인력 1인,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함
 - ※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가급적 기부식품 사업을 전담(또는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채용 등의 인건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것을 권고
 - ※ 보조인력의 범위: 겸직인력, 사회복지무요원,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
- 지자체는 운영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고, 사회복지무요원·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등을 우선 배치
 -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병무청 수요조사시 적극적으로 인력확보
- 자원봉사자 확보
 -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관리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적십자·공동모금회 등 기타 민간기관 자원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나.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인건비
 - 광역푸드뱅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수
 -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도 참고
- 종사자 교육훈련
 -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푸드뱅크·광역푸드뱅크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 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기부식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훈련 권장

※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전산교육,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 등

○ 종사자 건강진단

- 기부식품을 가공·조리·저장·운반하는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종사할 수 없음(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 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종사시키지 못함(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기타 사항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 가능

- 복지할인 내용 : 사회복지시설(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기요금 20% 감액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버지점 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관할 지사, 지점

- 구비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전기요금영수증, 사회복지관련 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신고증

※ [붙임 11]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안내



6.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의 철회·폐업

가. 철회·폐업 신고(법 제3조제3항)

-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을 신고

나. 절차

- 철회·폐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붙임 9] : 철회(폐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
 - (1)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2) 신고필증

다. 추가 조치사항

-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의 타당성과 기부식품 사용 및 처분(이관) 여부 확인
-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 중인 푸드뱅크(마켓)가 사업을 철회 또는 폐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장비는 관할 시·군·구에서 회수한 후, 관할 지역의 신고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
-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철회 또는 폐업 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해당 지역 광역푸드뱅크에서는 동 사실을 전국푸드뱅크에 보고

7.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붙임 12]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가. 국가 등의 지원(법 제7조)

- 보건복지부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위탁을 통해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 및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 운영
- 지자체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인건비, 운영장비,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경비 지원
 - ※ 신고사업자에게만 인건비·경비, 장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하여 계속,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

나. 식품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법 제10조)

-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및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1)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을 위반
 - (2)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
 - ※ 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다. 기부식품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 안전관리

- 지자체는 신고한 사업자가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및 결과 공개 여부, 식품 유통기한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 모집·제공, 사업장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라. 기부식품제공사업 공정성 제고

- 기부식품 배분, 이용자 선정 등 사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배분되는지, 배분기준에 맞게 이용자가 선정되는지, 이용자에게 중복적으로 식품이 배분되지는 않는지, 배분금지 대상에게 기부식품이 배분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마. 기부식품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

- 기부식품 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 전년도에 제공한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신고는 당연신고 전환, 미신고는 당연신고 필요
- 기부식품 제공자(미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기부식품의 안전취급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부식품 제공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

8.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가. 시정명령(법 제11조제1항)

○ 요건

- (1) 제3조제1항(임의신고) 또는 제2항(당연신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제공자 및 사업자가 제5조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절차 :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 통지를 통하여 시정명령

나. 사업 정지명령 및 사업장 폐쇄명령(법 제11조제2항)

○ 요건

- (1)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6조제1항(기부식품 무상제공)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 폐쇄시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다. 사업장 폐쇄(법 제11조제4항)

○ 요건 : 사업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

○ 행정처분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폐쇄조치의 종류

-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 표시물의 제거·삭제
-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함
- ※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 요건

- (1) 봉인 또는 게시문 부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2)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를 요청하는 때

라. 벌칙 및 양벌규정(법 제12조, 13조)

- 제6조 제1항(기부식품 무상제공)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상제공 위반행위(제6조제1항)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마. 과태료(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요건
 - (1) 제3조 제2항(당연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5조 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 안전 취급)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지도·감독)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 행정처분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처분, 의견청취 등의 절차

(1) 서면통지 : 해당 위반행위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기재

(2) 의견제출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3)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 이의제기시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실시

○ 징수절차

- 과태료 징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과태료 체납시(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징수절차

- 과태료 체납시(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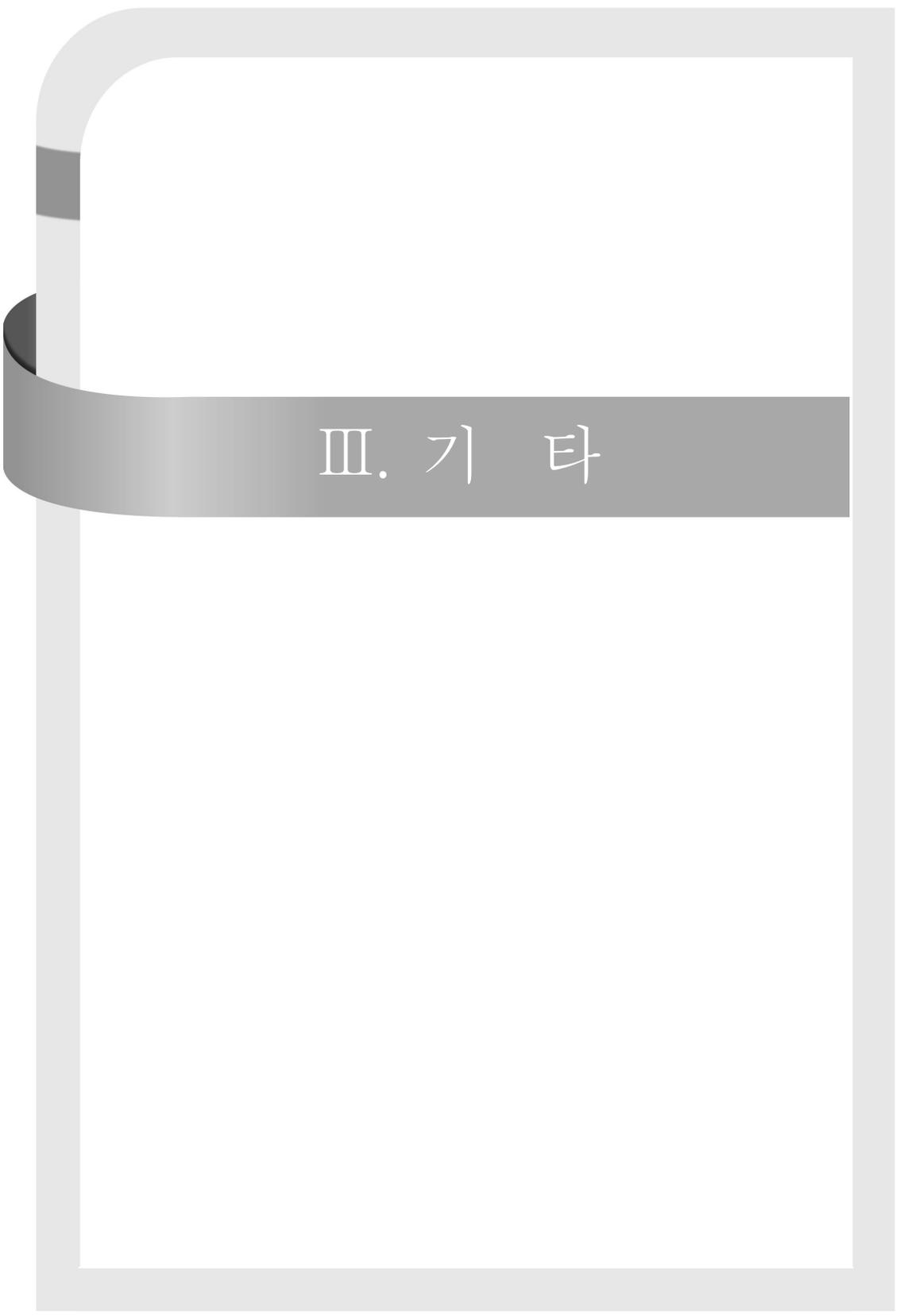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1)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300	3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300	300	300



III. 기타

기타

1. 붙임자료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붙임 2〉 기부식품제공사업 계획서(예시)

〈붙임 3〉 사업자 신고증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붙임 5〉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붙임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붙임 9〉 철회(폐업) 신고서

〈붙임10〉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붙임11〉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사용 메뉴얼

〈붙임12〉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12.>

사업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만 해당)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사업장 명칭	신고 종류 임의[] 당연[]		
	소재지	면적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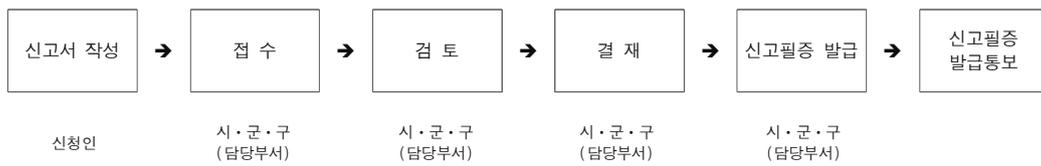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기부식품제공 사업계획서(예시)

사업계획서

1. 기관소개

2. 사업의 필요성

3. 설치·운영 사업계획(개조식으로 기술)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현황(최근 3년)
-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성과(최근 3년)
 - 기부실적

구분	계		기업(식품제조 및 유통, 후원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각종 법인·단체		개인 기부자	
	개소	천원	개소	천원	개소	천원	명	천원
합계								
연도								

- 지원실적

구분	합계		재가결식자		사회복지 이용시설 (무료급식소포함)		무료급식소		사회복지단체 및 생활시설		전국·광역 등 푸드뱅크 이관처리 실적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제공 금액	이용 인원
합계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연도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관리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규모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후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기대효과

4. 사업예산 계획

5.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붙임 3 사업자 신고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사 업 자 신 고 증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남/녀) :

주 소 :

사업자명칭 :

소 재 지 :

사업장면적 :

신고의 종류:

조 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붙임 4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연 령		시 · 군 · 구
주 소			
전 화		휴 대 폰	
팩 스		이 메 일	
이 용 자 구 분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부식품이 필요한 자와 인근지역 이용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 용 자 특 성 <input type="checkbox"/> 결식아동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재가어르신 <input type="checkbox"/> 재가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독신가정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가족관계	동거가족()명, 관계()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계소득	월소득() 소득내역()		
가정형편			
관 련 증빙자료	※ 이용신청서 작성 시 관련 증빙서류(의료급여증 또는 긴급지원에 관한 정황증빙 등) 첨부		
<p>본인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푸드뱅크, 푸드마켓)로부터 제공받은 기부식품 또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기부식품을 유통기한 내 소비할 것을 서약함.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기부식품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p>본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p>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input type="radio"/>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업무에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input type="radio"/>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서 및 추천관련 서류에 기재된 정보, 개인이력(기부식품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력)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input type="radio"/> 상기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input type="radio"/>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div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div> <p>* 귀하는 상기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기부식품 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input type="radio"/> 본 사업자는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제공내용 : 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상의 개인정보 - 수집정보 활용 :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input type="radio"/> 귀하는 상기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기부식품 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put type="radio"/>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div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div>	
<p>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p>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붙임 5

기부식품 영수증(예시)

<h1>기부식품 영수증</h1>	
No. 2012-0001	
기부식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공정, 투명하게 제공되며 활용됩니다.	기 부 금 품 : 일 금 (₩)
	기 부 내 역 : (수량 개)
	기 부 일 자 : 2012. 00. 00 (건수:)
	기 부 자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빌딩 00층
	2012년 월 일
<p>*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증할 경우 기부식품(장부지역)전역을법인세법시행령 제 19 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55 조에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p>	
<p>기부식품 수령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 0 0 0 (인)</p> <p>* 전국푸드뱅크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p>	
<p>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p> <p>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전화 : 2077-3985-6 팩스 : 02-713-7297</p>	<p>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전국푸드뱅크</p>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기부금 수령인

작성 방법

1.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 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7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명세서

연월일	모 집					제 공				
	기부자	품 명	수 량	가 액	비고	이용자	품 명	수 량	가 액	비고

- ※ 작성요령
- 기부받은(제공한)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I. 목 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부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식품기부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식품을 이용하도록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Ⅱ. 기본방침

가. 모든 기부식품 대상 관능검사 실시

- 유통기한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내용물을 확인·검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

나. 조리식품은 이용자 제공 전 또는 섭취 전 반드시 재가열

- 조리식품은 가열하여 활용하되 특히 여름철과 위해도가 높은 식품은 세심한 주의 요망

다. 기부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

-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및 관능검사결과 식품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처리

라.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등 전문가 도움 요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책임이 있으며, 동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음



- 제공자 및 사업자 또는 담당책임자가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마. 폐기대상 식품이 기부된 경우도 기부자에 대한 예의 준수

- 폐기대상 식품의 기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선의의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식품기부에 참여하도록 예우 받음

Ⅲ. 기부식품 관리 3대 원칙

가. 청결의 원칙

- 1) 기부식품이 아무리 안전한 경우라도, 전달과정 및 보관 등 취급시에 청결을 등한시하게 되면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할 수 없음
- 2) 식품위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생·청결」은
 - 단순히 식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설비, 식품 취급자의 청결 등을 의미하며 특히, 식품취급자인 제공자 및 사업자 등 관계 종사자들의 청결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함
- 3) 기부식품을 관리하여서는 안 되는 사람
 - 설사·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질환(화농증 등) 또는 음식물을 통하여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환에 감염된 자
 - 종사자 또는 그 동거인이 법정전염병환자이거나 그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와 보균자임이 판명된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종사자 또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자와 동거하거나 동일 직장에서 작업하는 종사자로서,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나. 신속의 원칙

- 1) 어떤 세균도 존재하지 않는 무균상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므로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기부된 식품은 배급·취식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해당 보관조건에 따라 냉장·냉동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함
- 2)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준수
 - 도시락류는 7시간 경과 후부터 식중독 발생위험이 빠르게 높아지므로, 일반 도시락·햄버거류의 경우 여름철(6~9월)에 10시간, 그 밖의 계절에는 12시간이 경과하면 위험함(김밥의 유통기한은 7시간)

다. 냉장 또는 가열의 원칙

- 1) 식중독균은 그 종류에 따라 증식의 최적온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36~37℃) 범위에서 잘 자람.
- 2) 5℃에서부터 60℃까지 광범위한 온도 범위 내에서 증식이 가능하므로 식품 보관 시 이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온도가 식중독균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10℃	0℃	5℃	10℃	37℃	60℃	65℃
거의 발육하지 않음	발육하는 세균도 있음		모든 세균이 활발히 증식		어떤 종류의 세균은 사멸하지 않음		대부분 세균이 사멸함

Ⅳ. 일반적인 식품의 안전성 검사

가. 서류검사

- 1) 유통기한과 같이 문서나 표시 등 활자로 된 정보를 활용
- 2) 기부업체에서 발급한 기부대장에 기초하여 식용으로서의 적합여부 판단



나. 관능검사

- 1) 직접 사람의 오감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부된 모든 식품은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2) 특히 쉽게 상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표본을 직접 시식하여 안전성 검사
- 3) 관능검사 기준

① 생식품류의 관능검사 기준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양 호	보 통	불 량
가금육 (닭고기류)	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함.	-	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거리거나 어두운 색을 띠.
식 육	쇠고기는 선홍색을 띠고 탄력이 있음. 돼지고기는 지방의 색이 희고 탄력이 있으며, 살코기는 옅은 분홍색을 띠.	-	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얼룩이나 반점이 있음. 이상한 냄새가 나고 탄력이 없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살이 단단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음	냄새가 비릿해짐.	물에 뜸.
	비늘이 피부에 잘 붙어 있으며, 어종 특유의 색깔과 싱싱한 광택을 띠.	탄력성이 조금 떨어짐.	몸체는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함.
	눈은 돌출하였고, 혈액의 침출이나 혼탁이 없음.	눈은 돌출하지 않고 약간 혼탁함.	눈은 들어가고 현저하게 혼탁하거나 떨어져나가고 있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아가미는 선홍색임	아가미는 선명하지 못하고 소량의 점착물이 있음	아가미는 암녹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남
	배 부분을 누르면 탱탱함	복부가 약간 무르기 시작함	복부는 주저앉고, 물렸음
	살색이 투명하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기 어려움	살은 약간 불투명하고 혈관도 약간 불투명함	살은 뿌옇고 혼탁함
계 란	껍질표면이 까실까실하고, 광택이 없음	-	깨보면 난백이 퍼짐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음	-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남
	전등빛에 비추면 밝고 투명함	-	전등빛에 비추면 어둡게 보임
채소류	광택이 있고, 싱싱함	벌레가 먹거나 상처가 있어도 그 부분을 잘라내면 싱싱함.	잎이 시들고 탄력이 없음
콩나물, 숙주류	조식이 단단함.	-	수분이 너무 많고, 내용물을 눌러 보았을 때 조식이 쉽게 문드러짐.

② 건식품류의 관능검사 기준

- 건고추류는 기본적으로 기부 받지 않는 것이 좋음.
 - 가을에 수확하여 해를 넘길 경우 고추 안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사실상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제품은 암 발생의 원인이 됨
 - 건고추류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 그해 생산된 안전한 제품은 기부받기가 어려움.
- 말린 제품류(건어물류, 육포, 건과일류 등)
 - 원래의 색감보다 진해져 탁한 색감을 띠거나, 조직이 물러졌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 부패되고 있는 상태임.

③ 가공식품의 관능검사 기준

- 가공식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간(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경과 유무 및 장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 2주 정도로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의 경우에는 부패의 속도가 빨라 며칠 사이에 해당 제품을 먹을 수 없게 됨.
 - 유통기간이 2, 3년씩 되는 제품의 경우(주로 캔류임)에는 수주일 또는 수개월 내에 안전성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음

다. 정밀검사: 이 · 화학적 검사

- 관능검사를 통해서도 식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부량이 많은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적합판정 후 활용
- 정밀검사는 검체를 채취하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



참 고

●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	
- 유제품류	우유, 요구르트, 버터, 치즈, 우유가 들어간 음료류 등
- 생선가공품류	각종 생선 캔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 육가공품류	햄, 소시지, 족발 등
● 상대적으로 위해가 적은 식품	
- 탄수화물류	떡류, 빵류, 과자류, 사탕류 등
- 건조식품류	마른멸치, 미역, 오징어 등
- 장 류	고추장, 된장, 간장류
● 특히 주의하여야 할 식품	
- 조리식품 중 샐러드류, 달걀구이, 자른 햄과 소시지, 생선회 등은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여름철에는 이런 식품류는 배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식품류의 경우도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다량 섭취 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	

V. 기부식품 보관 및 운송요령

가. 식품의 보관기준

-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함.
-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관방법(실온, 냉장, 냉동 등)이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음.

식 품 의 종 류	보 존 온 도
· 곡류가공품(밀가루·전분) · 설탕	실온 실온
· 포장육(진공포장육 제외) · 햄류 및 소시지, 분쇄가공품(가열제품) · 베이컨 · 멸균·건조식육제품, 유처리 육제품 · 기타식육제품 - 냉장제품 - 냉동제품	-2~0℃ 0~10℃(비가열소시지0~5℃) 10℃ 이하 실온 -2~10℃ -18℃ 이하
· 어육제품 - 냉장제품 - 냉동제품 - 멸균·건조어육제품	0~10℃ -15℃ 이하 실온
· 유지류(식용유 등)	실온
· 날계란 · 알가공품 (건조식품 제외)	10℃ 이하 5℃ 이하
· 우유, 농축유, 탈지유, 유크림류 · 연유 · 버터류· 치즈류 -냉장제품 -냉동제품	0~10℃ 실온 0~10℃ -18℃ 이하
· 신선 과일채소류	10℃ 이하
· 신선 어패류	5℃ 이하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진공 포장된 제품 (햄, 소시지, 국수류 등)	포장지와 내용물이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어야 하는 제품이 포장과 내용물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미 이물질이 발생하여 포장상태가 변화한 것으로 유통기한 이전 제품이라도 부패하였을 가능성이 큼.
콩제품 (두부류)	표면에 점액이 있고 겉면이 분홍빛을 띰. 특히, 부패도가 높을수록 악취가 심함.
포장된 국수류 (냉면, 쫄면, 가는 국수류 등)	내용물에 곰팡이가 피거나 내용물간에 흰 실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 상한 상태임.
음료수류	팻트병에 들어있는 경우 흔들어 햇빛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함. 단, 제조상 자체 액기스(내용물)가 들어있는 종류는 다름.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토마토 주스 등 주로 팻트병 제품보다 고가격 제품들임)
캔 류	부풀어 있거나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함. - 찌그러진 부분으로 공기 등 이물질 유입 가능 - 특히, 육류제품의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니움이라는 치명적인 물질이 존재할 우려가 높음.
우유, 요구르트 등	상하면 시큼한 냄새가 남.
수산가공품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내용물이 서로 엉겨서 덩어리져 있는 것은 상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조리해서 먹어야 함.
초콜렛	본래의 갈색에서 색이 흐려져 있고, 색이 고르지 않으며 부분 부분 흰 빛깔의 다른 느낌을 주며, 대체로 원래보다 심하게 건조되어 있음.
어묵류	포장지와 내용물간에 가는 실 같은 이물질이 발생되어 있고, 미끈미끈한 점액이 생겨있음.
유당처리제품 (도우넛, 튀김만두, 튀김 과자류등)	기름에 튀긴 가공품류의 색이 너무 진한 갈색을 띠는 것은 산화부패된 기름에 튀긴 것으로 식중독 및 노화의 원인이 됨
냉동가공품 (돈까스, 만두류등)	내용물이 서로 엉겨있는 것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저하된 것임
탄수화물가공제품 (빵류, 떡류 등)	제품의 한부분에 곰팡이가 핀 경우에 전량 폐기토록 함. 이미 제품 전체에 곰팡이 포자가 퍼져있는 상태이므로 곰팡이만 떼어내고 먹는 것은 위험함.

나. 기부식품의 운송·보관요령

1) 일반원칙

- 냉동·냉장 유통 또는 보관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적정설비를 갖춘 운반차량 혹은 용기를 이용하여 운송 또는 보관하도록 함.
- 운반과정 중 용기가 파손되거나 먼지 또는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 재가열이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식품의 중심부 온도가 적어도 75℃ 이상에 이르도록 가열하여야 함.
- 재가열된 식품은 더운 상태(60℃이상)에서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소비되지 않은 식품은 폐기처분하여야 함.
- 검수가 끝난 식품은 바닥에서 20cm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창고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기탁식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임.

2) 냉장·냉동고의 관리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채소류를 보관하는 장소는 10℃전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나
 - 문의 개폐를 고려하여 냉동고는 -20℃이하, 냉장고는 5℃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도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 자동기록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냉장·냉동고는 용량의 70%이하로 보관하고, 문의 개폐는 신속하고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냉장·냉동고는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 식품으로부터 유출된 침출액 등에 의해 더러워진 경우에는 그때마다 청소를 하여야 함.
- 시설의 청소는 모든 식품을 작업장내에서 완전히 반출하거나 청소에 따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바닥 및 기구류 등은 가능한 건조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3) 냉동·냉장차의 관리

- 관리는 냉장고의 원칙에 준하여 실시함
- 청소는 배송 후 냉동·냉장 작동장치를 끈 후에 내부청소를 바로 하고, 내부 환기를 시켜 차 내부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배송 시 식품 침출액이 배출되었을 경우 소독 청소를 하도록 함.

VI. 행정사항

- 가.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나. 전국 및 광역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의 위생적인 모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관능검사기법 등을 수집·연구 및 보급 강구

붙임 9 철회(폐업) 신고서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12.>

철회·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철회(폐업)일	철회(폐업)사유	
	신고증 분실사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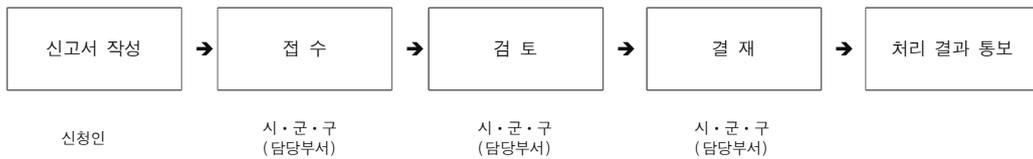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2. 신고필증 ※ 사업자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제할용품)]



붙임 10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135-79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http://www.kepcoco.kr FAX 02-3456-4598
영업처 영업운영팀 차장 강미숙 ☎ 021-3456-4571 beam@kepcoco.kr

문서번호 영업(운)82102-5405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시행일 2009. 9.24.

수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참조 복지자원운영실장

121-805

제목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복지할인 적용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문 푸드뱅크운영과305-778(2009.08.18)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당사 예하사업소에 상기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할인 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 ② 전기요금영수증
- ③ 사회복지관련 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신고증**. 끝.

0F4D-0004-7A18-1394

결	담당	과장	부장	실장	사무총장	회장
재	강미숙	이영민	전영기			김민우



한국전력공사사장



0F4D-0004-7A18-1394



기부식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기초-요약본)

전국푸드뱅크



목 차

1. 이용자관리(UM)

- 1.1 이용시설단체관리
 - 1.1.1 이용시설단체관리
 - 1.1.1.1 이용시설단체등록/상세
- 1.2 이용자관리
 - 1.2.1 이용자관리
 - 1.2.1.1 이용자등록/상세
 - 1.2.2 이용자그룹관리
 - 1.2.3 이용자변경 신청 및 승인

2. 기부자관리(GM)

- 2.1 기부자관리
 - 2.1.1 기부자관리
 - 2.1.1.1 기부자등록/상세

3. 기부물품관리 (EM)

- 3.1 기부물품접수
 - 3.1.1 기부물품접수관리
 - 3.1.1.1 기부물품접수등록/상세
- 3.2 기부물품이관
 - 3.2.1 기부물품이관등록
 - 3.2.2 기부물품이관현황
 - 3.2.3 기부물품인수관리
- 3.3 기부물품제공
 - 3.3.1 기부물품제공등록(물품우선)
 - 3.3.2 기부물품제공등록(이용자우선)
 - 3.3.3 기부물품제공현황
 - 3.3.4 기부물품인수미확인건

- 3.4 기부물품영수
 - 3.4.1 기부물품영수증등록
 - 3.4.2 기부물품영수증현황
- 3.5 기부물품폐기
 - 3.5.1 기부물품폐기등록
 - 3.5.2 기부물품폐기현황
- 3.6 기부물품마감
 - 3.6.1 일자별입출고내역
 - 3.6.2 기간별입출고내역

4. 지원센터 관리 (FM)

- 4.1 기부식품지원센터
 - 4.1.1 기부식품지원센터관리
 - 4.1.1.1 지원센터등록/상세

5. 통계자료 (ST)

- 5.1 기부물품자료현황
 - 5.1.1 기부물품접수통계
 - 5.1.2 기부물품제공통계

6. 기탁의뢰관리(HC)

- 6.1 기업기탁접수(기초)
 - 6.1.1 기업기탁접수검수(기초)

7. 업무지원계시판(BS)

- 7.1 업무지원계시판
 - 7.1.1 업무지원계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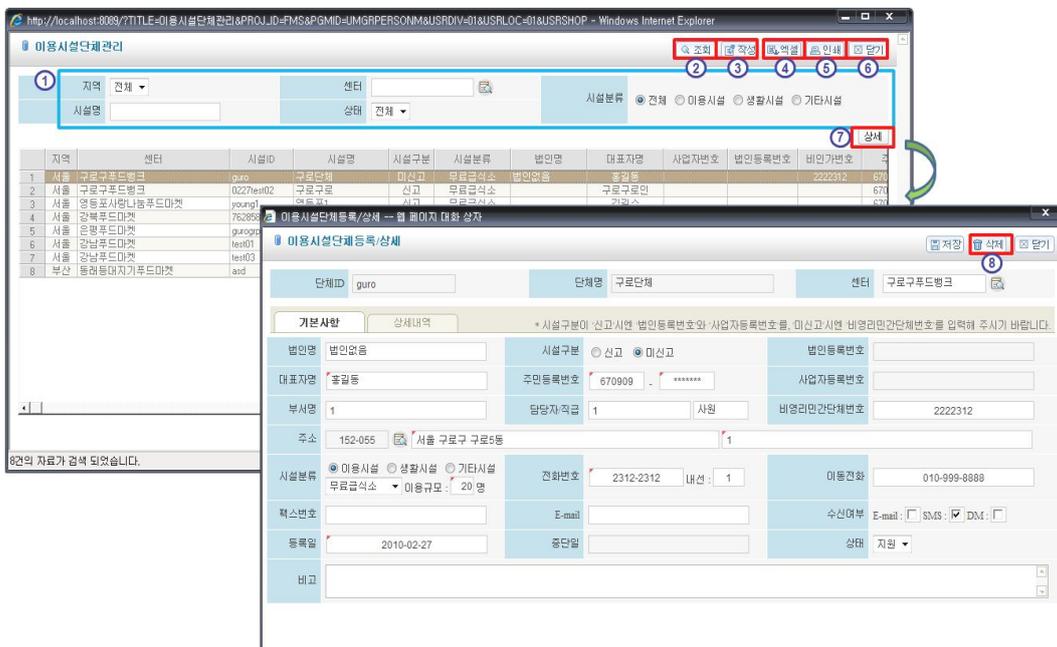
1. 이용자관리(UM)

1.1 이용단체시설관리

센터에서 이용시설을 조회, 저장, 삭제 관리합니다.

1.1.1 이용단체시설관리

- 센터에서 이용시설단체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 **이용자관리 > 이용시설단체관리 > 이용시설단체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시설단체관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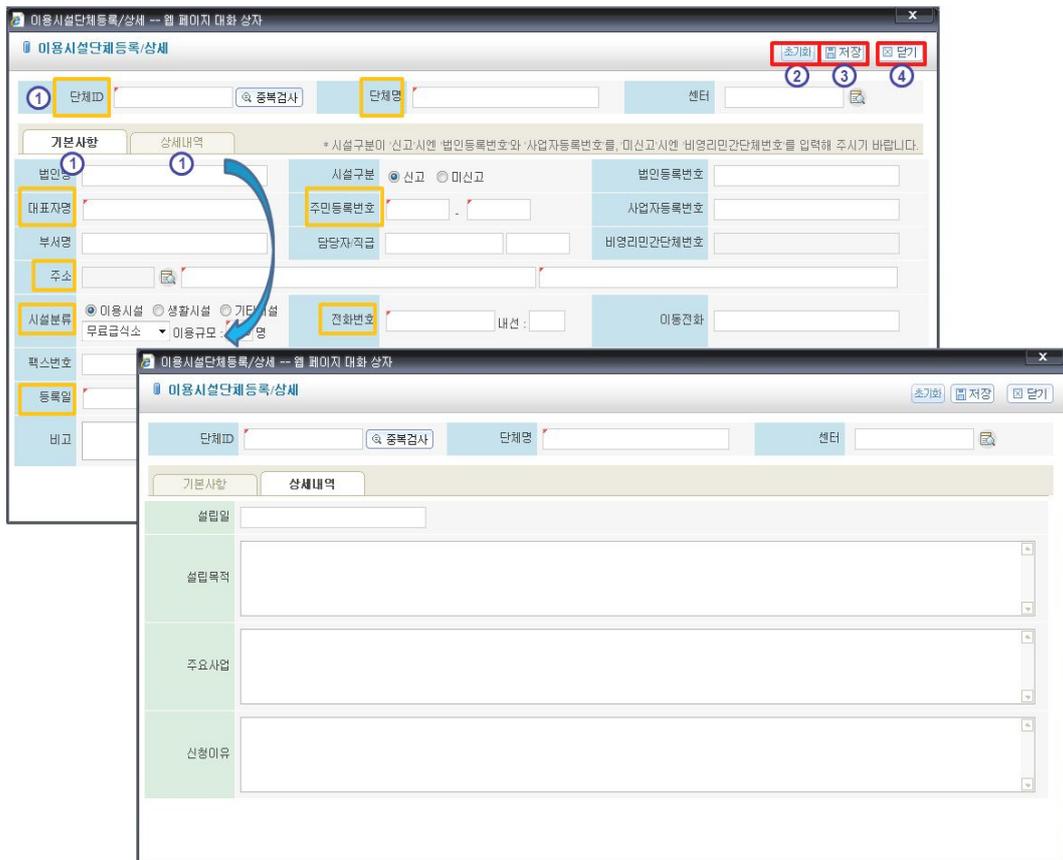


- ① 조회 조건을 선택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하단에 이용시설단체가 조회됩니다.
- ③ [작성] 버튼을 선택하면 새로운 이용시설 단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④ 조회된 이용시설단체관리를 엑셀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⑤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이용시설단체관리를 인쇄 하실 수 있습니다.
- ⑥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초기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 ⑦ [상세] 버튼을 선택하면 조회목록 중 선택된 목록의 상세내역이 나타납니다.
- ⑧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삭제가 되는데 이용시설에서 기존에 이용한내역이 없을 경우 에 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1.1.1.1 이용시설단체등록/상세

○ 조회된 이용시설단체관리를 [작성] 또는 [상세]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되는 화면입니다.
 [저장]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센터의 이용시설로 저장이 됩니다.

○ 이용시설단체등록/상세 화면



- ① 기본사항과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사항은 꼭 입력해야 합니다.)
- ② [초기화] 버튼을 선택 하면 입력했던 정보가 전부 초기화 됩니다.
- ③ [저장] 버튼을 클릭 하면 이용시설이 등록 됩니다.
- ④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초기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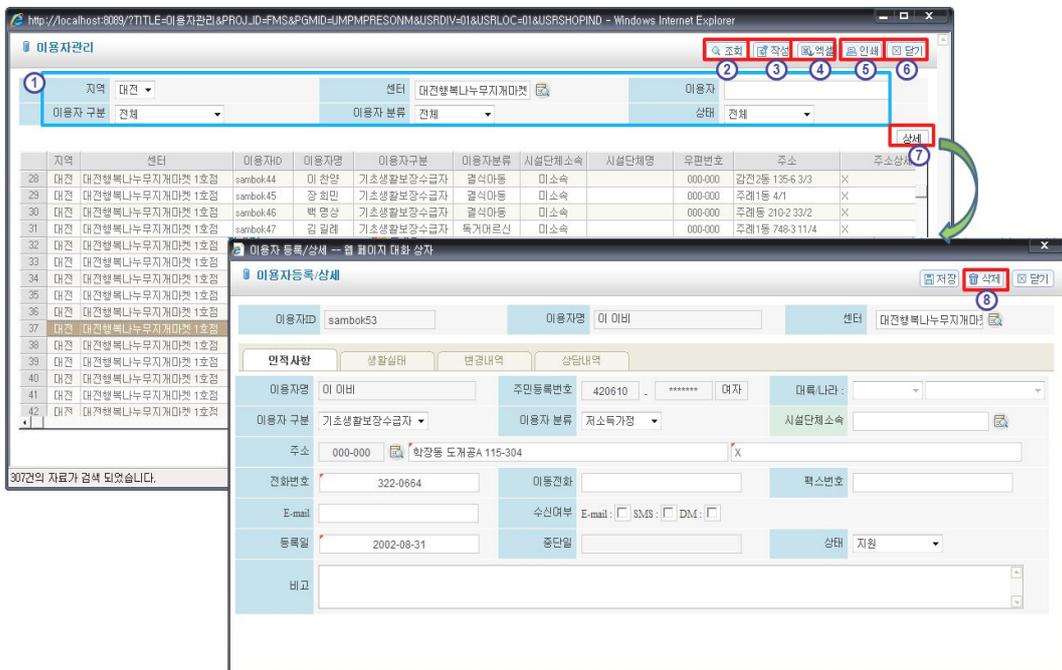
1.2 이용자관리

센터에서 이용자를 조회, 저장, 삭제 관리합니다.

1.2.1 이용자관리

이용자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 **이용자관리>이용자관리>이용자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자관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① 조회 조건을 선택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하단에 이용자가 조회됩니다.
- ③ [작성] 버튼을 선택하면 신규 이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④ 조회된 이용자를 엑셀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⑤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이용자관리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⑥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초기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 ⑦ [상세] 버튼을 선택하면 조회목록 중 선택된 목록의 상세내역이 나타납니다.
- ⑧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삭제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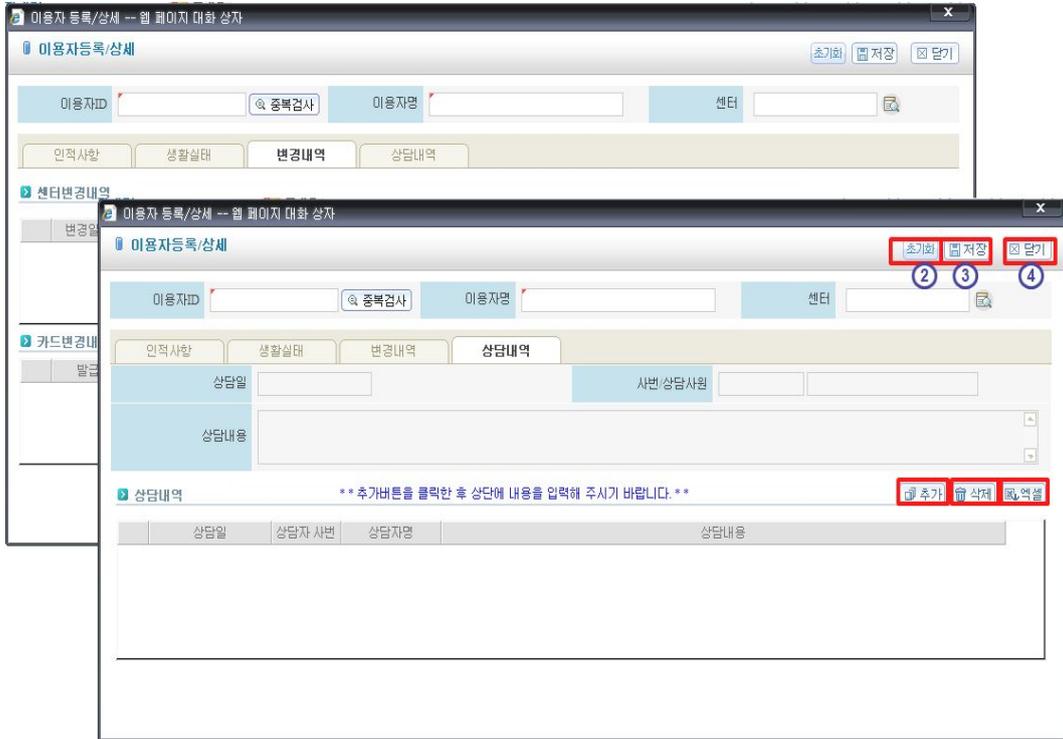
1.2.1.1 이용자등록/상세

- 조회된 이용자관리를 [작성]또는 [상세]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되는 화면입니다.
내용을 입력 한 후 [저장]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센터의 이용자로 저장이 됩니다.

○ 이용자등록/상세 화면

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of a web application interface for user management.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이용자등록/상세' (User Registration/Details) page. It features a search bar with '이용자ID' and '이용자명' fields, and a '중복검사' (Duplicate Check) button. Below the search bar are tabs for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생활실태' (Living Status), '변경내역' (Change History), and '상담내역' (Consultation History). The '인적사항' tab is active, showing fields for '주민등록번호' (Residence Registration Number), '이동전화' (Mobile Phone), 'E-mail', and '등록일' (Registration Date). A blue arrow points from the '등록일' field to the '생활실태' tab. In the top right corner, there are three buttons: '초기화' (Reset), '저장' (Save), and '닫기' (Close), with callouts 2, 3, and 4 respectively. The bottom screenshot shows the same page but with the '생활실태' tab selected. It displays fields for '가족구성원수' (Number of Family Members), '18세미만 아동수' (Number of Children Under 18), '부채' (Debt), '가정형편분류' (Family Status), '소속사항' (Affiliation), '단속전화번호' (Surveillance Phone Number), '카드번호' (Card Number), '카드발행횟수' (Number of Card Issuances), and '카드사용구분' (Card Usage Category). At the bottom right, there are two buttons: '추가' (Add) and '삭제' (Delete), with callout 5 pointing to them.

- ① 인적사항과 생활실태, 상담내역을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사항은 꼭 입력해야 합니다.)
- 생활실태 탭에서 가족구성원 및 가정형편 등을 작성 합니다.
-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등록 [삭제] 버튼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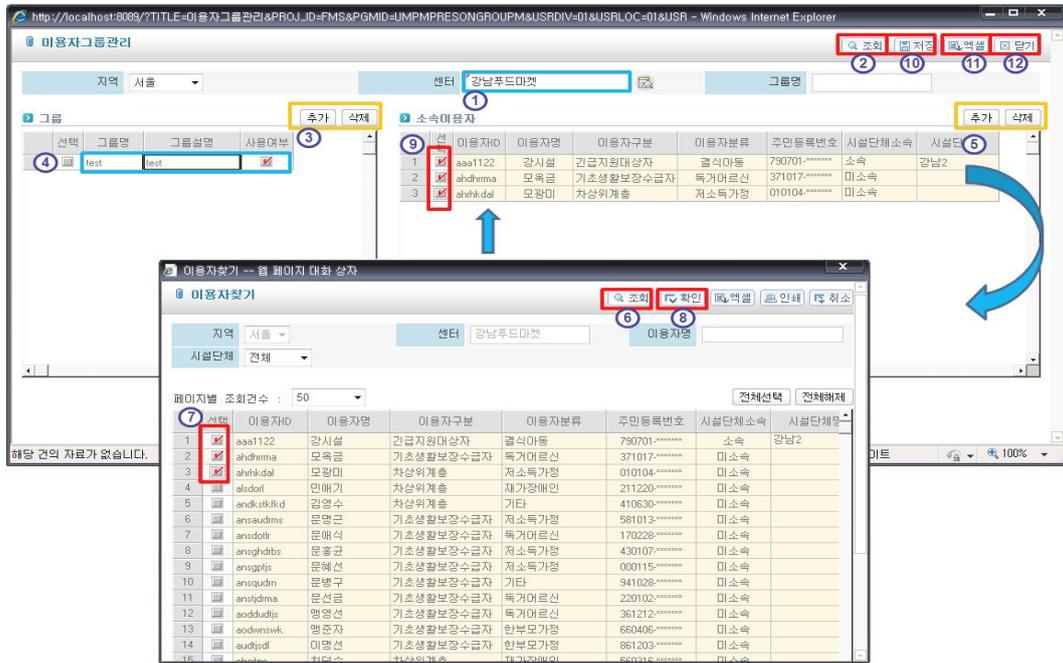


- 변경내역 탭에서는 센터와 카드발급의 변경내역을 조회 합니다.
- 상담내역 탭에서 이용자와 상담한 내역을 작성 합니다.
 -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상담에 입력하여 등록 [삭제] 버튼을 선택하여 삭제 합니다. [엑셀] 버튼을 이용하여 상담내역을 엑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② [초기화] 버튼을 선택 하면 입력했던 정보가 전부 초기화 됩니다.
- ③ [저장] 버튼을 클릭 하면 이용자가 등록 됩니다.
- ④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초기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1.2.2 사용자그룹관리

사용자그룹관리 하는 화면입니다.

- 사용자관리>사용자관리>사용자그룹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사용자그룹관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① 필수 입력 사항인 센터를 선택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그룹과 그 그룹의 소속이용자가 조회됩니다.
- ③ 그룹시트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을 추가하고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그룹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④ 그룹명과 그룹설명을 작성합니다. 사용여부도 체크 합니다.
- ⑤ 소속이용자 시트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그 그룹의 소속될 이용자를 추가 시켜줄 수 있고,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용자 찾기- 팝업이 생성되는데,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 ⑦ 조회된 이용자중 그룹을 원하는 이용자를 선택합니다.
- ⑧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⑨ 그룹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용자를 체크를 합니다.
- ⑩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그룹이 저장이 됩니다.
- ⑪ 조회된 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⑫ [닫기] 버튼을 화면이 닫히고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1.2.3 이용자변경신청 및 승인

이용자 변경신청 및 승인 메뉴는 다른 기초에서 이용중인 이용자가 타 기초센터로 소속센터가 변경되었을 때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 **이용자관리>이용자관리>이용자변경 신청 및 승인**을 선택하면 이용자변경신청 및 승인메뉴로 이동됩니다.
- ① **[신청탭]**을 클릭합니다.
- ② 이용자명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자를 입력합니다.
- ③ **[조회]** 버튼을 눌러 대상자를 검색합니다.
- ④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⑤ **[요청]** 버튼을 누르면 과거에 이용하던 기초센터에 지원센터 이관요청이 전달됩니다.
- ⑥ 웹페이지의 경고메세지가 출력되며 **[확인]** 버튼 클릭시 요청처리됩니다.
- **이용자관리>이용자관리>이용자변경 신청 및 승인**을 선택하면 과거 이용자로 등록된 기초센터 계정에서 이용자변경 승인 목록이 표시됩니다.



- ① 승인할 목록을 클릭합니다.
- ② **[승인]** 버튼을 누르면 과거에 이용하던 기초센터에서 이용자가 변경됩니다.

2. 기부자관리(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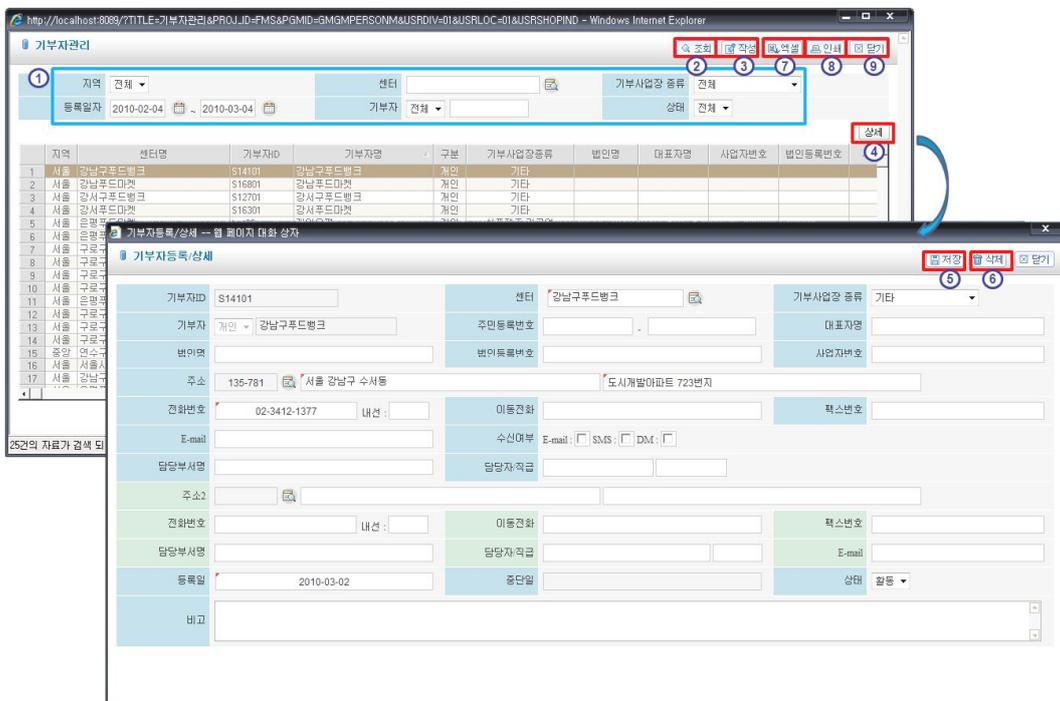
2.1 기부자관리

센터에서 기부자를 조회, 저장, 삭제 관리 합니다.

2.1.1 기부자관리

센터에서 기부자를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 기부자관리>기부자관리>기부자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자관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① 조회 조건을 선택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하단에 기부자가 조회됩니다.
- ③ [작성] 버튼을 선택하면 신규 기부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④ [상세] 버튼을 선택하면 조회목록 중 선택된 목록의 상세내역이 나타납니다.
- ⑤ 수정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저장이 됩니다.
- ⑥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삭제가 됩니다.
- ⑦ 조회된 이용자를 엑셀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⑧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이용자관리를 인쇄 하실 수 있습니다.
- ⑨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초기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2.1.1.1 기부자등록/상세

- 조회된 기부자의 [상세] 버튼이나 [작성] 버튼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 기부자등록 / 상세 화면

- ① 신규 등록 시, 필수 입력 항목을 입력합니다.
- ② [초기화] 버튼은 입력한 항목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초기화 시켜 줍니다.
- ③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저장 됩니다.
- ④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초기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3. 기부물품관리 (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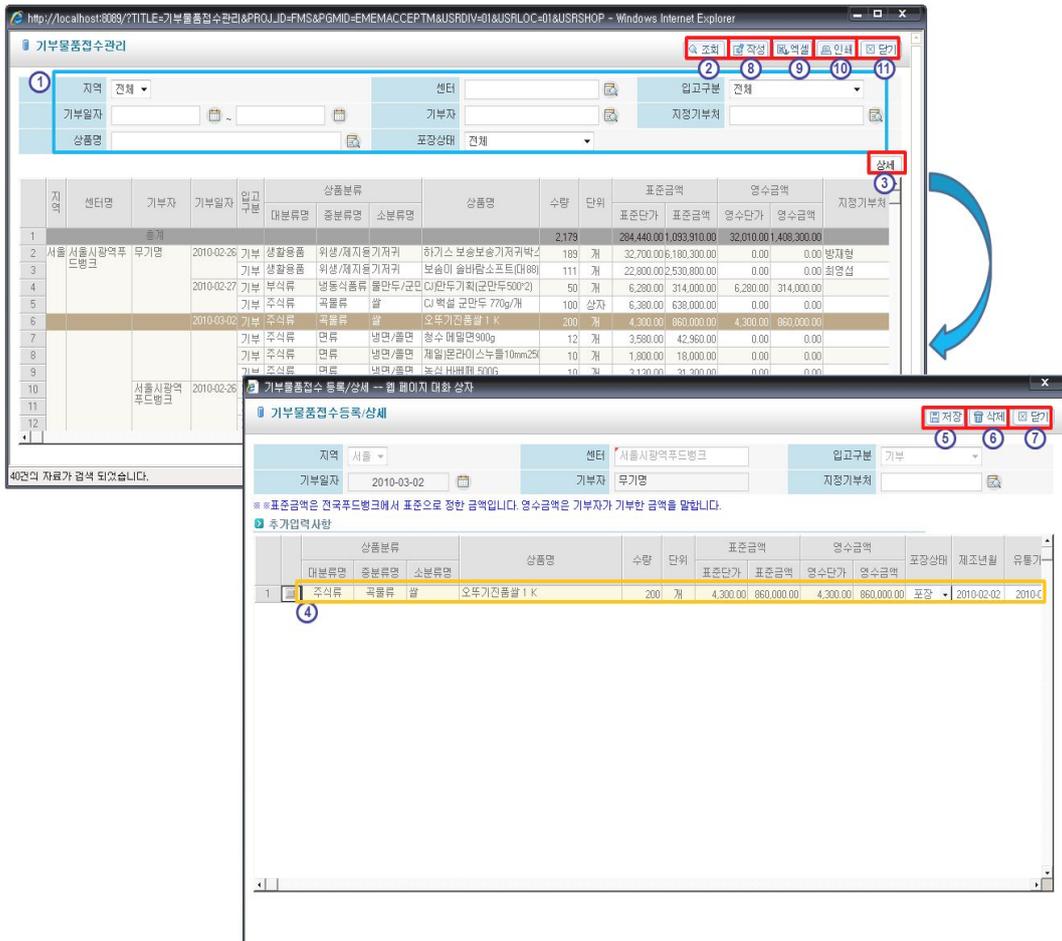
3.1 기부물품접수

센터에서 기부물품을 관리 합니다.

3.1.1 기부물품접수관리

센터에서 기부물품을 접수하는 화면입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접수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물품접수관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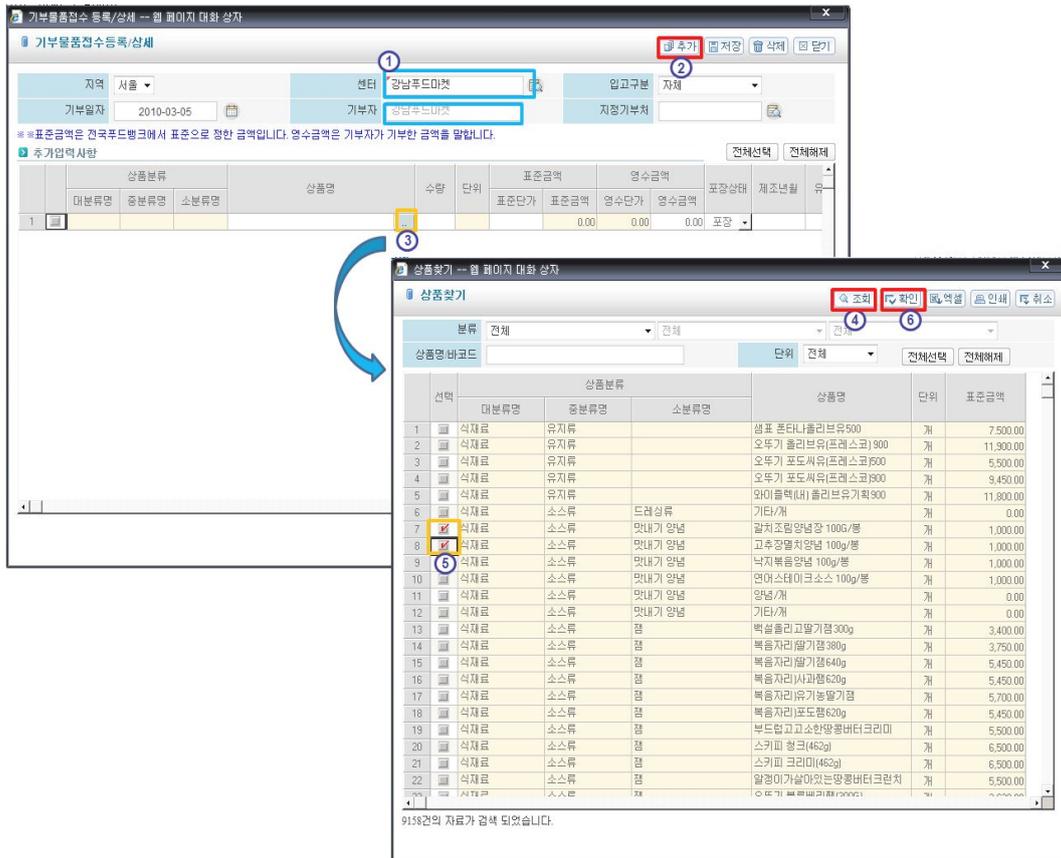




- ① 조회 조건을 설정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조회가 됩니다.
- ③ 조회된 내역에 대해 [상세] 버튼을 선택하면 상세 창이 생성 됩니다.
- ④ 기부 받은 물품에 대해 수정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관이나 배분, 폐기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만 수량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정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저장됩니다.
- ⑥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기부 받은 물품에 대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⑦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창이 닫히면서 처음 조회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 ⑧ [작성] 버튼을 선택하면 작성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창이 생성 됩니다.
- ⑨ 조회된 이용자관리를 엑셀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⑩ 내역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 ⑪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초기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3.1.1.1 기부물품접수등록/상세

기부물품접수관리에서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되는 화면입니다.



- ① 필수 조건인 센터를 정하고 그 센터에 등록된 기부자도 정합니다.
- ②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 ③ 시트의 행이 추가 되면서 상품명을 상품 팝업을 통해 선택 할 수 있게 됩니다.
- ④ 상품 팝업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상품이 조회 됩니다.
- ⑤ 원하는 상품을 체크 합니다.
- ⑥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2015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기부물품접수등록/상세' (Donation Item Registration/Detail) page. It includes a header with '추가' (Add), '저장' (Save), '삭제' (Delete), and '닫기' (Close) buttons. Below the header is a form with fields for '지역' (Area), '센터' (Center), '기부일자' (Donation Date), '기부자' (Donor), and '입고구분' (Receipt Type). A table lists items with columns for '대분류명' (Major Category), '중분류명' (Sub Category), '소분류명' (Minor Category), '상품명' (Product Name), '수량' (Quantity), '단위' (Unit), '표준금액' (Standard Price), '영수금액' (Receipt Price), '포장상태' (Packaging Status), and '제조년월' (Manufacture Date/Year). A yellow box highlights a row in the table, and a blue arrow points to the '저장' button.

The bottom screenshot shows the '기부물품접수관리' (Donation Item Management) page. It has a similar header and form. The table below shows a list of items, with a yellow box highlighting a row. A blue arrow points from the top screenshot to this one.

- ⑦ 시트에 상품명에 등록된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량, 포장상태 등에 대해 입력 합니다.
- ⑧ 저장하기 전에 삭제할 상품이 있을 경우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 ⑨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저장됩니다.
- ⑩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처음 조회하는 화면으로 갑니다.
- ⑪ 등록한 센터에 대해 물품접수 조회를 하면 등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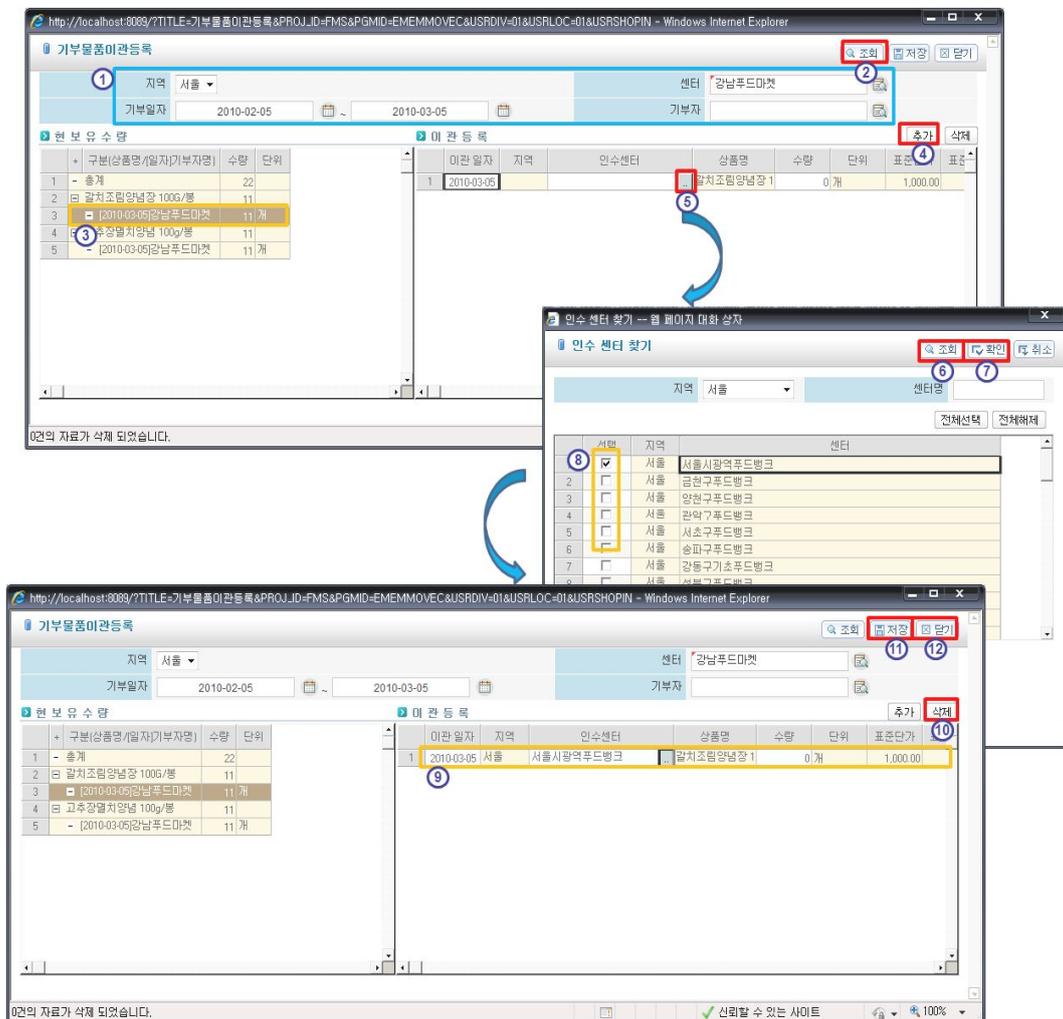
3.2 기부물품이관

센터에서 기부물품을 이관 합니다.

3.2.1 기부물품이관등록

센터에서 기부물품을 타 센터에 이관하는 화면입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이관>기부물품이관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물품이관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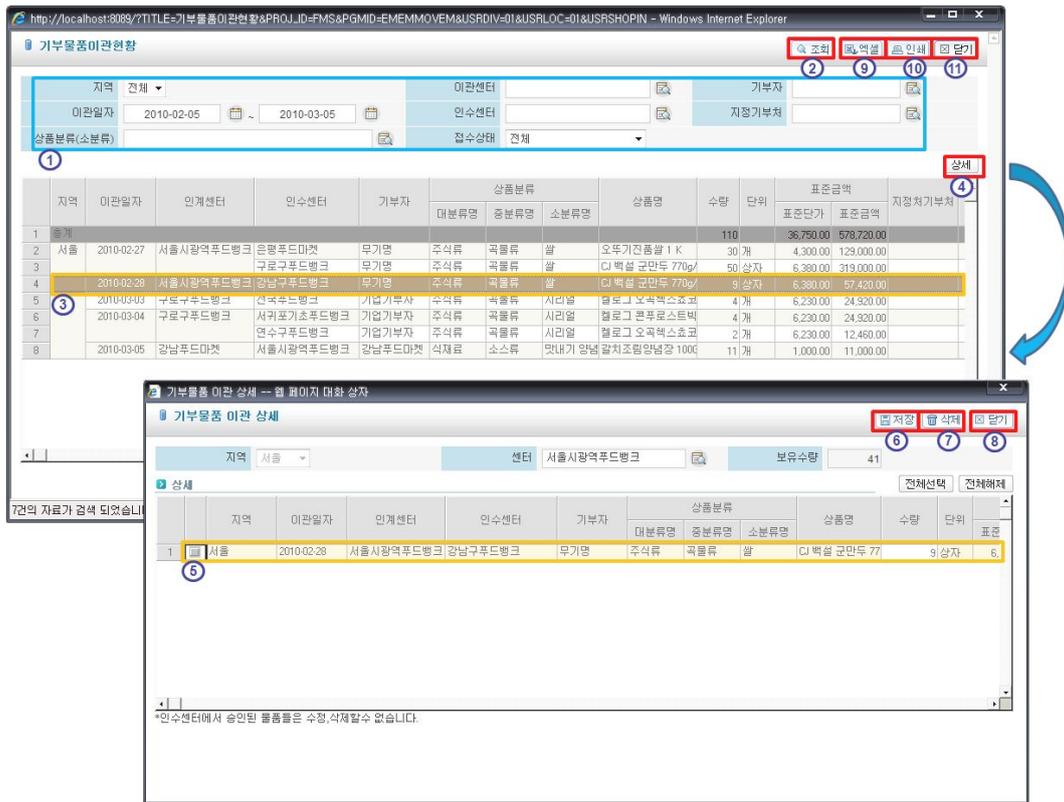


- ① 조회 조건을 설정합니다. 필수인 센터는 꼭 지정해야 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좌측 현 보유수량 시트에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부물품이 조회 됩니다.
- ③ 이관할 물품을 선택합니다.
- ④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이관할 센터를 지정하는 시트가 추가 됩니다.
- ⑤ 센터를 지정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 ⑥ '센터찾기' 팝업에서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센터가 조회 됩니다.
- ⑦ 원하는 센터를 체크 합니다.
- ⑧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⑨ 센터가 지정된 걸 확인 할 수 있고, 수량 등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
- ⑩ 센터의 지정이 잘못 되거나 삭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 ⑪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센터로 이관되면서 저장이 됩니다. 내역은 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⑫ **[닫기]** 버튼을 화면이 닫히고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3.2.2 기부물품이관현황

센터에서 기부물품을 이관한 내역을 조회,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이관>기부물품이관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물품이관 현황』 화면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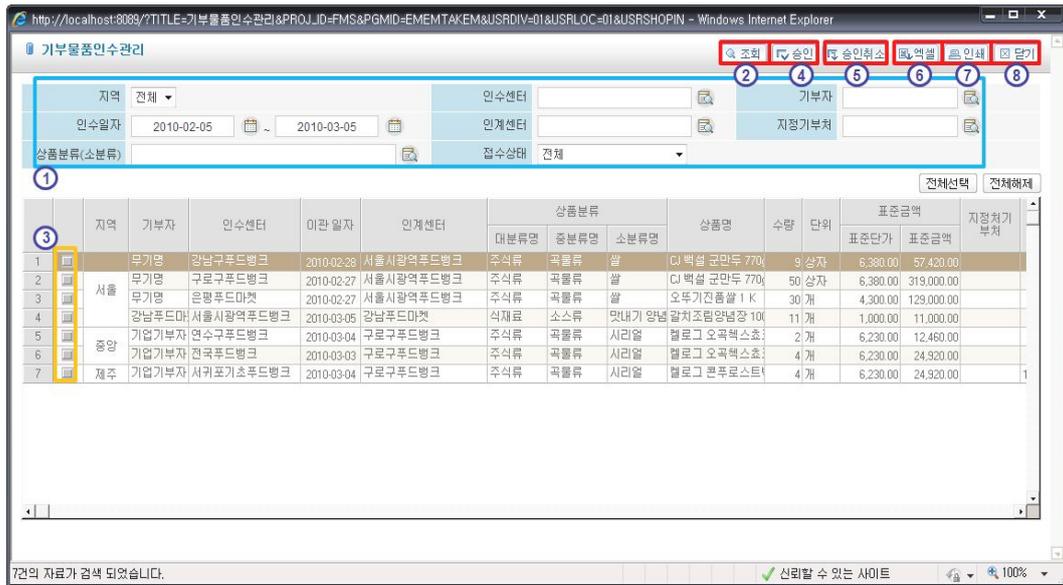
- ① 조회 조건을 설정 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이관현황이 조회됩니다.
- ③ 시트의 조회된 내역을 확인 하고 수정 할 경우 내역에 대해 선택합니다.
- ④ [상세] 버튼을 선택하거나 더블 클릭 시 상세 창이 생성됩니다.
- ⑤ 상세 내역에 대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⑥ 수정한 내역에 대해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저장됩니다. (단 이미 인수 승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⑦ [삭제] 버튼을 선택할 경우 이관한 내역이 삭제됩니다. (단 이미 제공이나 폐기 된 경우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⑧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처음 현황 조회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 ⑨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⑩ 조회된 내역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 ⑪ [닫기] 버튼을 화면이 닫히고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3.2.3 기부물품인수관리

센터에서 다른 센터로부터 기부물품을 인수 받은 물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인수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물품인수관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① 조회 조건을 설정 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센터별 기부물품을 이관 받은 인수 내역이 조회됩니다.
- ③ 인수 받은 물품에 대해 승인 처리를 하려면 물품에 대해 체크를 합니다.
- ④ [승인] 버튼을 선택하면, 배분이나 폐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승인 시 기부 물품을 이관한 센터에서는 이관현황에서 이관내역을 수정,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⑤ [승인] 을 하면 접수상태가 접수에서 승인 상태로 변경이 되며, [승인취소]를 하면 다시 접수 상태로 됩니다.
- ⑥ 조회된 내역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 ⑦ 조회된 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 ⑧ [닫기] 버튼을 화면이 닫히고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3.3 기부물품제공

3.3.1 기부물품제공등록(물품우선)

기부물품제공등록(물품우선) 메뉴는 기존 FMS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나 현보유수량 표기와 제공등록 부분의 일부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제공>기부물품제공등록(물품우선)을 선택하면 이용자에게 보유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 ① [기부물품제공등록(물품우선)]을 메뉴를 클릭합니다.
- ② 현보유수량 메뉴는 자체, 지원, 이관 등 물품접수 구분별로 표기가 되며 기부일자, 기부처, 기부건수로 표기됩니다.
세부항목은 날짜별 누적 기부일자와, 기부번호, 식품분류체계, 식품명으로 표기됩니다.
- ③ 제공등록 메뉴에서는 이용자명을 더블클릭하면 제공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별로 제공일자를 다르게 변경하여 제공처리 할 수 있습니다.



3.3.2 기부물품제공등록(이용자우선)

기부물품제공등록(이용자우선) 메뉴는 동일한 이용자에게 여러 물품을 제공처리할 경우 처음에 선택한 사용자목록이 자동증가 하도록 추가된 메뉴입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제공>기부물품제공등록(이용자우선)을 선택하면 이용자별로 보유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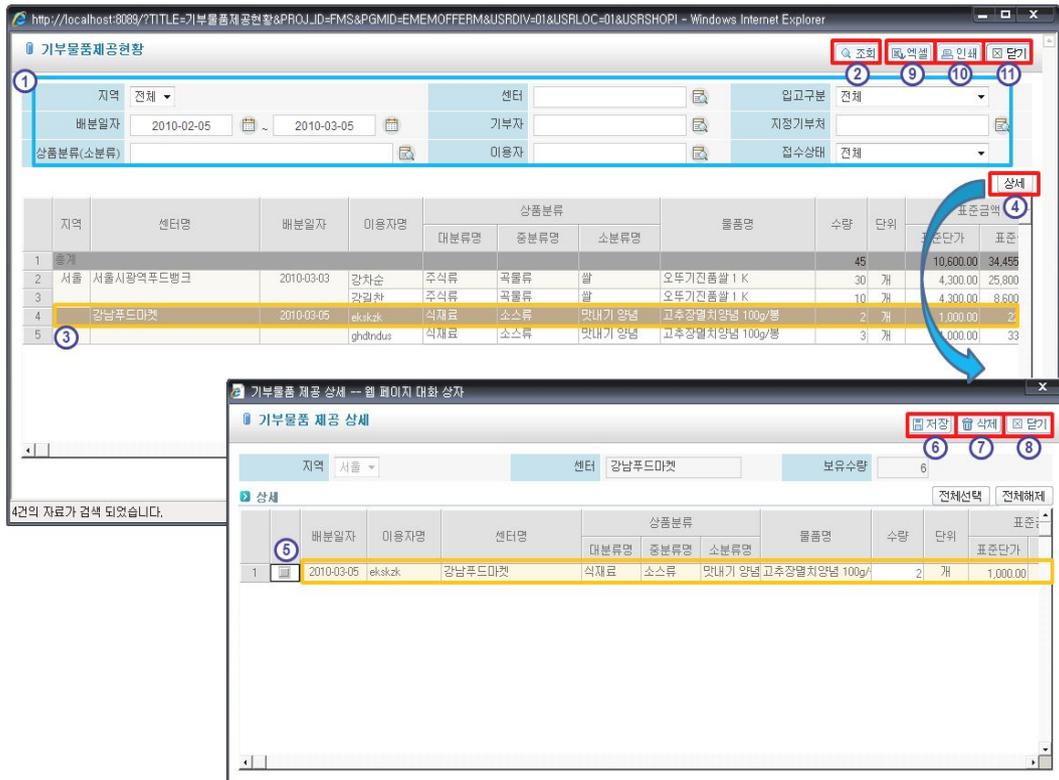


- ① [기부물품제공등록(이용자우선)]을 메뉴를 클릭합니다.
- ② 현보유수량 메뉴는 자체, 지원, 이관 등 물품접수 구분별로 표기가 되며 기부일자, 기부처, 기부건수로 표기됩니다.
세부항목은 날짜별 누적 기부일자와, 기부번호, 식품분류체계, 식품명으로 표기됩니다.
- ③ 이용자 등록 메뉴는 첫 행에 이용자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행 부터는 자동으로 동일한 사용자가 선택됩니다.

3.3.3 기부물품제공현황

센터의 기부물품 제공내역을 조회,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제공>기부물품제공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물품제공 현황』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① 조회 조건을 입력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센터별 제공내역이 조회됩니다.
- ③ 제공 내역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 할 경우 내역을 선택합니다.
- ④ [상세] 버튼을 선택하거나 더블클릭 하면 상세 내역이 생성됩니다.
- ⑤ 상세내역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⑥ 수정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저장이 됩니다.
- ⑦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제공내역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⑧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팝업창이 닫히고 처음의 제공내역페이지가 보입니다.
- ⑨ 조회된 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⑩ 조회된 내역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 ⑪ [닫기] 버튼을 화면이 닫히고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3.3.4 기부물품인수미확인건

기부물품 인수미확인건 메뉴는 물품을 이관하는 센터에서 이관처리는 하였으나 물품을 이관받는 센터에서 이관처리를 하지않은 경우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제공>기부물품인수미확인건을 선택하면 이관처리는 하였으나 이관받는 센터에서 이관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관일자	이관센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바코드	상품명	수량	단위	관할단가	판매금액
2011-06-16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대용용품	화장품	90690501016	화장품/개	530	개	1,502.69	875,435.60
2012-06-16	전국푸드뱅크	주식류	곡물류	쌀	110110010032	쌀/kg	3,000	개	1,900.00	5,700,000.00
2012-05-01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4,676	개	2,518.51	11,776,552.76
2012-04-30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133	개	7,905.88	1,051,482.04
2012-04-17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182	개	7,827.29	1,424,566.78
2012-04-10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136	개	8,090.62	1,100,324.32
2012-04-03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132	개	8,036.11	1,060,766.52
2012-04-01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2,788	개	2,267.27	6,321,148.76
2012-03-26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241	개	5,526.17	1,331,806.97
2012-03-21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261	개	6,122.91	1,598,073.51
2012-03-14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233	개	7,017.12	1,634,368.96
2012-03-05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216	개	7,916.17	1,709,892.72
2012-03-01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7,915	개	2,623.97	20,768,722.55
2012-02-27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147	개	8,071.70	1,186,533.90
2012-02-20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143	개	8,896.30	1,272,170.90
2012-02-13	전국푸드뱅크	생활용품	기타 생활용	기타 생활용품	951250840040	기타 생활용품/개	126	개	8,110.96	1,013,820.00

- ① [기부물품인수미확인건]을 메뉴를 클릭합니다.
- ② 이관센터에서는 이관처리하였으나 이관을 이수하는 센터에서 이관처리 하지 않은 목록들이 표시되는 화면입니다.

3.4 기부물품영수

3.4.1 기부물품영수등록

기부자에게 기부 받은 물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페이지입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영수>기부물품영수증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물품영수증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부물품영수증등록

지역: 서울 | 센터: 강남푸드마켓 | 기부자: 강남푸드마켓

기부번호	기부자	상품명	수량	단위	표준단가	표준금액	영수단가	영수금액	영수증상태
1201000042	강남푸드마켓	고추장멸치양념 100g/	11	개	1,000.00	11,000.00	0.00	0.00	미발행
1201000042	강남푸드마켓	갈치조림양념장 100G/	11	개	1,000.00	11,000.00	0.00	0.00	미발행

기부물품기부확인증

NO. _____

기부식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공정 투명하게 제공되어 활용됩니다.

기부금품 :	금 일천 원정	(₩ 1,000원)
기부물품 :	고추장멸치양념 100g외	(수량: 11 개)
기 부 일 :	2010-02-05 ~ 2010-03-05	
기 부 자 :	강남푸드마켓	
주 소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10 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1층	
수 령 처 :	관작영문	사업자등록번호 : 3118905064
수령센터 :	강남푸드마켓	
수 령 자 :	김국테스트 (인)	
전 화 :	02-554-1377	팩 스 : 02-445-7010
주 소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10 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1층	

2010-03-05

관작영문장
강남푸드마켓

*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증할 경우 기부물품(장부가액)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 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필수인 센터와 그 센터의 기부자를 선택하고 조회 조건을 입력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센터의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조회 됩니다.
- ③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출력하기는 위해서 체크를 하고 영수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④ **[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기부물품확인증' 이라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 ⑤ **[발행]** 버튼을 선택하면, 확인 메시지와 함께 프린터로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재발행은 영수증 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상태		영수증상태
미발행		영수
미발행		미발행
미발행	-->	미발행
미발행		미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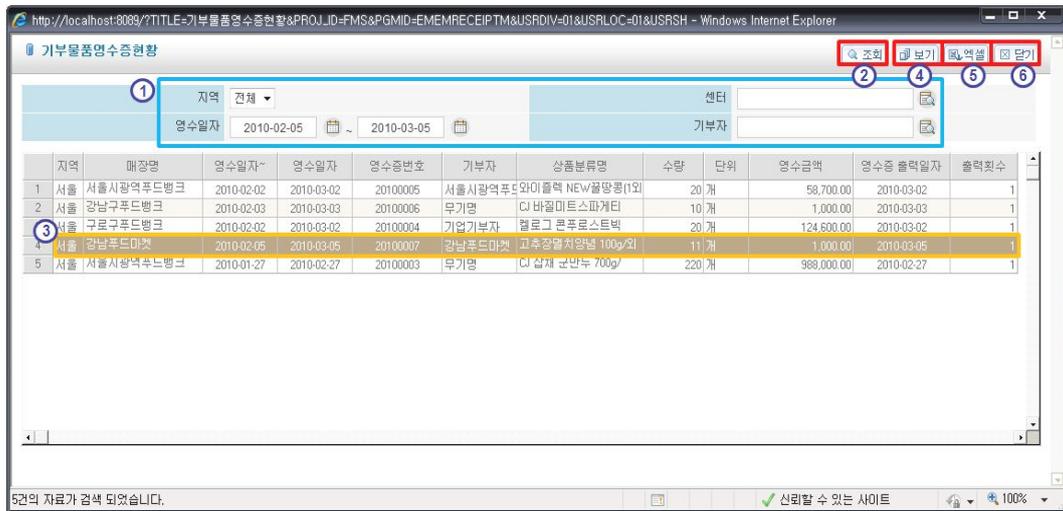
(발행 시 영수증 상태 미 발행에서 '영수'로 변경)

- ⑥ 조회된 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 ⑦ **[닫기]** 버튼을 화면이 닫히고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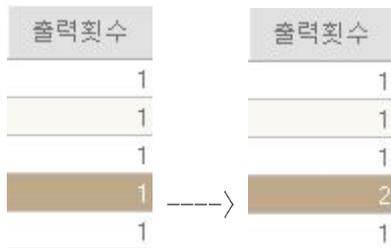
3.4.2 기부물품영수증현황

기부 받은 물품에 대한 발행한 영수증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영수> 기부물품영수증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물품영수증현황』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① 조회 조건을 입력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기부물품의 영수증 발행현황이 조회 됩니다.
- ③ 영수증을 보기 위해서는 내역을 선택합니다.
- ④ [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영수증 발행 화면이 나타나며, 재발행 할 수 있습니다. 재발행 하게 되면 출력횟수가 올라갑니다. (발행 화면은 영수증 등록에서 한 화면과 같습니다.)



- ⑤ 조회된 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 ⑥ [닫기] 버튼을 화면이 닫히고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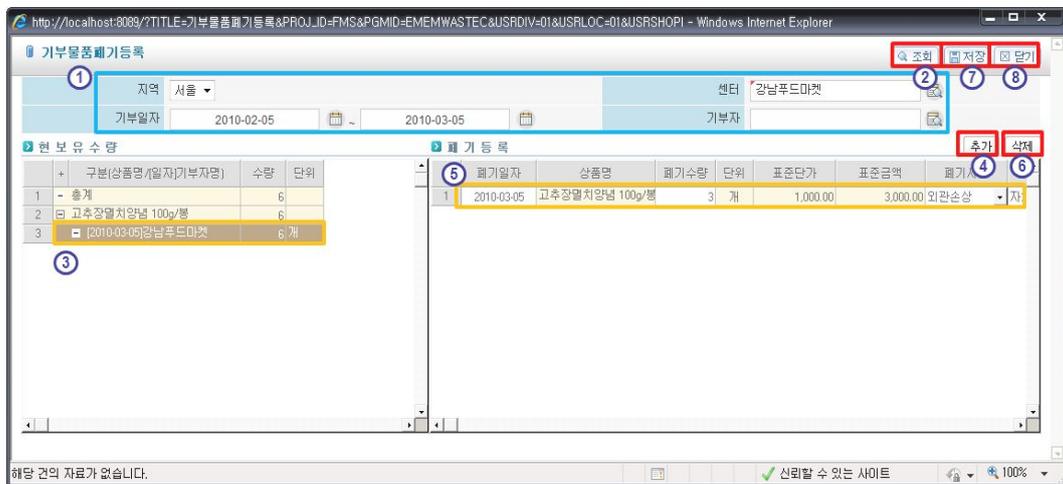


3.5 기부물품폐기

3.5.1 기부물품폐기등록

기부물품을 폐기 하는 화면입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폐기>기부물품폐기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물품폐기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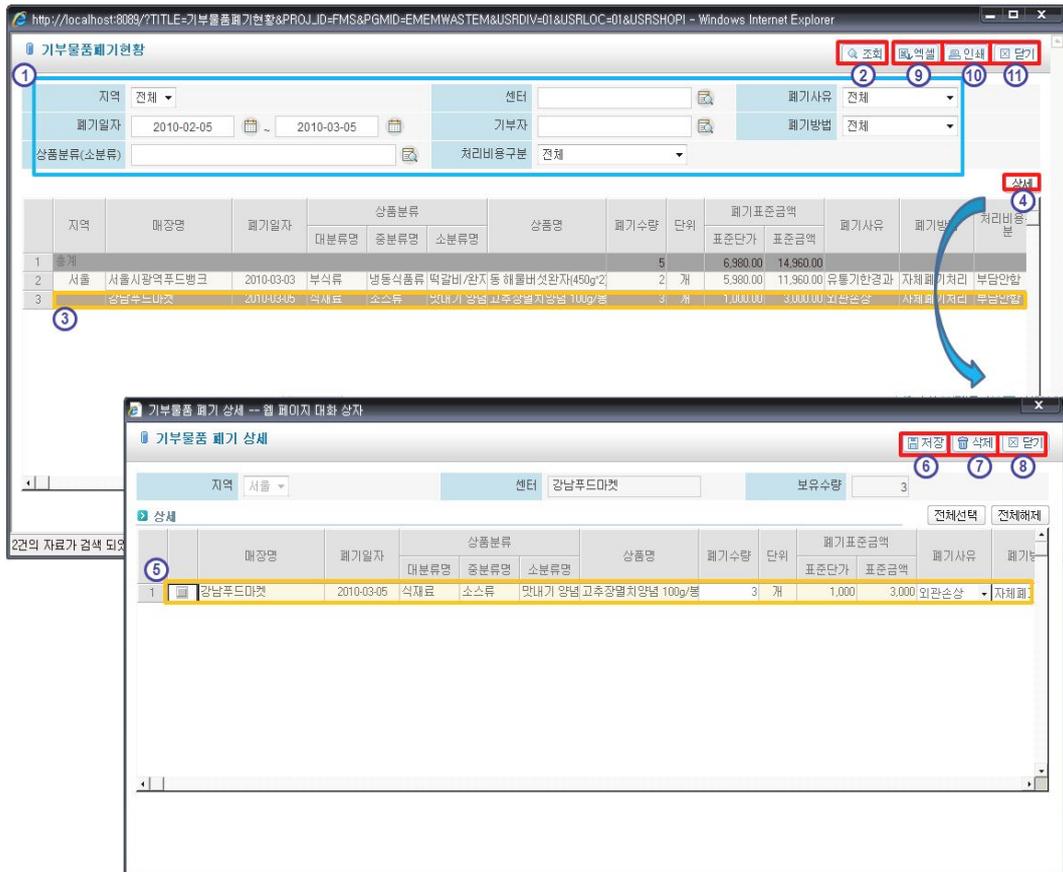


- ① 조회 조건을 입력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좌측 시트에 현 보유수량이 조회됩니다.
- ③ 폐기 시킬 상품을 선택합니다.
- ④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시트가 생성됩니다.
- ⑤ 생성된 시트에 수량, 폐기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 ⑥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폐기 목록에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⑦ [저장] 을 선택하면 폐기 목록에 있는 물품이 저장이 됩니다.
(폐기 목록은 폐기현황에서 수정,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⑧ [닫기] 버튼을 화면이 닫히고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3.5.2 기부물품 폐기현황

기부물품을 폐기현황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폐기>기부물품폐기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물품 폐기 현황』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① 조회 조건을 입력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물품 폐기 내역이 조회됩니다.
- ③ 폐기물품의 상세내역을 확인 하려면 폐기 내역을 선택합니다.
- ④ [상세] 버튼을 선택하거나 더블 클릭을 합니다.
- ⑤ 수량이나 세부내역에 대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⑥ 수정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수정되어 저장 됩니다.
- ⑦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폐기 내역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⑧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처음 폐기 내역 조회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 ⑨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⑩ 조회된 내역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 ⑪ [닫기] 버튼을 화면이 닫히고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3.6 기부물품마감

3.6.1 일자별입출고내역

일자별 입출고 내역을 조회 하는 화면입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마감>일자별입출고내역 메뉴를 선택하면 『일자별입출고내역』 화면이 나타납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일자별입출고내역' (Daily In/Out) interface. At the top right, there are buttons for '조회' (Search), '재고현황' (Inventory Status), '엑셀' (Excel), '인쇄' (Print), and '닫기' (Close). A search bar contains the date '2010-03-29'.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input fields for '총이용자수' (Total Number of Users) and '총이용시설단체수' (Total Number of Facility Groups). The main table lists transactions with columns for '입고' (In) and '출고' (Out), including '접수량' (Quantity Received), '접수금액' (Amount Received), '인수량' (Quantity Issued), '인수금액' (Amount Issued), '재공량' (Inventory Quantity), '재공금액' (Inventory Amount), '인계량' (Transfer Quantity), '인계금액' (Transfer Amount), '재고량' (Inventory Quantity), '재고금액' (Inventory Amount), '개인이용자수' (Individual User Count), and '이용시설단체수' (Facility Group Count).

The '재고현황' (Inventory Status) window shows a table with columns for '대분류' (Major Category), '중분류' (Sub-category), '소분류' (Minor Category), '상품명' (Product Name), and '재고' (Inventory) with sub-columns for '재고량' (Inventory Quantity) and '재고금액' (Inventory Amount). The table lists various food items like '쌀' (Rice), '떡갈비' (Tteokgalbi), and '떡갈비/완자' (Tteokgalbi/Wonja).

- ① 조회 필수 조건인 조회일자를 입력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선택한 일자에 대한 입출고 내역이 조회됩니다.
- ③ 선택한 일자에 대한 총 이용자수와 총 이용시설단체수가 나타납니다.
- ④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⑤ 조회된 내역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 ⑥ [닫기] 버튼을 화면이 닫히고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 ⑦ [재고현황] 버튼을 선택하면 현재 날짜에 따른 센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한 재고가 조회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3.6.2 기간별입출고내역

기간별 입출고 내역을 조회 하는 화면입니다.

- 기부물품관리>기부물품마감>기간별입출고내역 메뉴를 선택하면 『기간별입출고내역』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간별입출고내역 - Windows Internet Explorer

기간별입출고내역

지역 서울 센터 서울시광역시푸드뱅크 조회기간 2010-02-28 ~ 2010-03-29

총이용자수 : 0명 총이용시설단체수 : 0 (단위 : 원)

상품명	입고				출고				재고	재고금액	개인이용자수	이용시설단체수
	접수량	접수금액	인수량	인수금액	제공량	제공금액	인계량	인계금액				
1 총계	617	3,119,020	75	294,765	54	441,030	198	899,781	159	875,240		
2 와이플렉 NEW풀빵(130g/켄)	10	14,200	0	0	0	0	0	0	2	2,840	0	0
3 켈로그 오곡렉스초코 별과달	0	0	2	12,460	0	0	0	0	0	0	0	0
4 [3kg]삼안금싸라기	0	0	0	0	0	0	2	2,400	0	0	0	0
5 CJ백설 통그랑뎡 750g/개	10	49,800	0	0	0	0	0	0	2	9,960	0	0
6 동해물비빔완자(450g*2)	10	59,800	0	0	0	0	0	0	2	11,960	0	0
7 목우촌 꿀죽스테이크(460g*2)	11	74,800	0	0	0	0	0	0	2	13,600	0	0
8 오뚜기진품쌀 1 K	200	860,000	0	0	2	8,600	80	344,000	3	12,900	2	0

[입고]: 선택한 기간동안 접수 또는 타센터로 부터 이관 받은 수량, 금액
 [출고]: 선택한 기간동안 개인이용자나 이용시설단체에 제공된 수량, 금액과 타센터로 이관한 수량, 금액
 [재고]: 선택한 기간동안 입출고 된 내역
 [개인이용자수]: 선택한 기간동안 해당
 [이용시설단체수]: 선택한 기간동안 해당
 [총개인이용자수]: 선택한 기간동안 재
 [총이용시설단체수]: 선택한 기간동안 재

35건의 자료가 검색 되었습니다.

재고현황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재고현황

지역 서울 센터 서울시광역시푸드뱅크 (단위 :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품명	재고	
				재고량	재고금액
1	총계			176	1,022,600
2	주식류	곡물류	CJ백설 군만두 770g/개	3	19,140
3	주식류	곡물류	[쌀10kg] 문백영농무농약백미(10KG)	11	31,000
4	주식류	곡물류	[쌀10kg] 삼안금싸라기쌀	11	27,800
5	주식류	곡물류	오뚜기진품쌀 1 K	3	12,900
6	주식류	면류	농심 바베테 500G	2	6,260
7	주식류	면류	제일/문라이스누들10mm250g	2	3,600
8	부식류	냉동식품류	롤만두/군만두	2	12,560
9	부식류	냉동식품류	롤만두/군만두	2	16,700
10	부식류	냉동식품류	대림/야채듬뿍 롤만두 720*2	2	12,560
11	부식류	냉동식품류	대림/풀판사각 잡채군만두 800g/개	2	12,560
12	부식류	냉동식품류	CJ 백설 통그랑뎡 750g/개	2	9,960
13	부식류	냉동식품류	CJ 부꾸미(전병) 400g/개	2	7,960

※ 현재 날짜의 상품별 재고 자료

- ① 조회 필수 조건인 조회기간을 입력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선택한 조회기간에 대한 입출고 내역이 조회됩니다.
- ③ 선택한 조회 기간 동안의 총 이용자와 총 이용시설단체수가 나타납니다.
- ④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⑤ 조회된 내역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 ⑥ [닫기] 버튼을 화면이 닫히고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 ⑦ [재고현황] 버튼을 선택하면 현재 날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한 재고가 조회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4. 지원센터 관리 (FM)

4.1 기부식품지원센터

기부식품지원센터를 관리합니다.

4.1.1. 기부식품지원센터관리

푸드마켓, 푸드뱅크, 물류센터같은 기부식품 지원센터를 관리 하는 화면입니다.

- 지원센터관리>기부식품지원센터>기부식품 지원센터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식품지원센터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기부식품지원센터관리' (Support Center Management) interface. It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a list view and a detailed registration form.

List View (Top): A table listing various support centers. The columns include: 지역 (Region), 센터소속 (Center Affiliation), 지원센터명 (Support Center Name), 운영단체명 (Operator Name), 운영주체형태(대) (Operator Type), 운영주체형태(소) (Operator Type), 대표자명 (Representative Name), 센터전화번호 (Center Phone Number), 휴대전화번호 (Mobile Phone Number), 이메일주소 (Email Address), and 담당 (Responsible). The table lists 17 entries for the Seoul region, primarily under '기초' (Basic) affiliation.

Registration Form (Bottom): A detailed form for registering a support center. The form is titled '기부식품지원센터등록/상세' (Support Center Registration/Details). It includes fields for:

- 지역 (Region): 서울 (Seoul)
- 센터소속 (Center Affiliation): 기초 (Basic)
- 센터구분 (Center Type): 푸드마켓 (Food Market)
- 센터명 (Center Name): pos2
- 기본사항 (Basic Information):
 - 시군구 (City/Gun/Gu): 서울 동대문구 (Seoul Dongdaemun-gu)
 - 소재지 (Address):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3 (Seoul Dongdaemun-gu Dapsilri-dong 123)
 - 전화번호 (Phone Number): 654-9874 (내선: 2222) (Extension: 2222)
 - 이동전화 (Mobile Phone): 010-222-2332
 - 팩스번호 (Fax Number): 02-1213-1256
 - 담당부서 (Department):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 담당자_직위 (Responsible Person/Title): 김용길 (Kim Yong-gil)
 - E-mail: clikeser@na.com
 - 등록일자 (Registration Date): 2010-02-23
- 센터원정보 (Center Staff Information): A table listing staff members with columns for 사원번호 (Staff ID), 사원명 (Staff Name), 포스비밀번호 (POS Password), 사원구분 (Staff Type), 사원직위 (Staff Position), 사원부서 (Staff Department), 웹사용여부 (Web Usage), 웹사용자ID (Web User ID), 웹사용자비밀번호 (Web User Password), 포스팅가능여부 (Posting Allowed), and 주문가능여부 (Ordering Allowed).

- ① 조회 조건을 입력합니다.
- ②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지원센터가 조회됩니다.
- ③ 지원센터의 상세 내역을 보려면 조회된 내역의 센터를 선택합니다.
- ④ [상세] 버튼을 선택하거나 더블클릭 합니다.
- ⑤ 센터의 상세내역을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저장됩니다.
- ⑥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상세 창이 닫히며, 조회 화면으로 갑니다.
- ⑦ 조회된 기부식품지원센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⑧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조건을 입력하고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⑨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이 종료되고 처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4.1.1.1 지원센터/상세

3 센터사원정보

사원번호	사원명	포스비밀번호	사원구분	사원직위	사원부서	웹사용여부	웹사용자ID	웹사용자비밀번호	포스팅가능여부	주요기능여부	추가	삭제
1	S168010001	test	담당사원	과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test	tes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2

<센터사원정보관리>

- 센터사원 정보 등록화면입니다.
- ①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과 같이 시트가 생성되며, 각 필요사항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웹 사용여부에 체크 할 경우 웹 사용자 ID, 비밀번호는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된 ID와 비밀번호는 FMS 로그인 하는데 사용됩니다.
- ②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등록된 사원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지원센터 등록/상세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기부식품지원센터등록/상세

지역: 중앙 | 센터소속: 전국 | 센터구분: 물류센터 | 센터명: | 호점추가

기본사항: 장비보유및설비사항 | 식생물관리부합관리 | 자원봉사자관리

매장면적: 0

비품내역: 운반캐리머: 0대 | 전자저울: 0대 | 열균건공포장기: 0대 | 전화기: 0대 | 이동전화기: 0대 | 팩스및프린터: 0대 | 포스: 0대 | 기타: 0대

***** 1개이상의 같은 물품 등록시 1개씩 따로 등록하세요 *****

2 차량

소유구분	건용유무	차종	적재량(리터)	승차인원	배기량	구	1	2	추가	삭제
1	겸용								1	2

3 냉장냉동고

소유구분	건용유무	용량(리터)	구입일	폐기일	사용유무	추가	삭제
1	겸용				사용	1	2

4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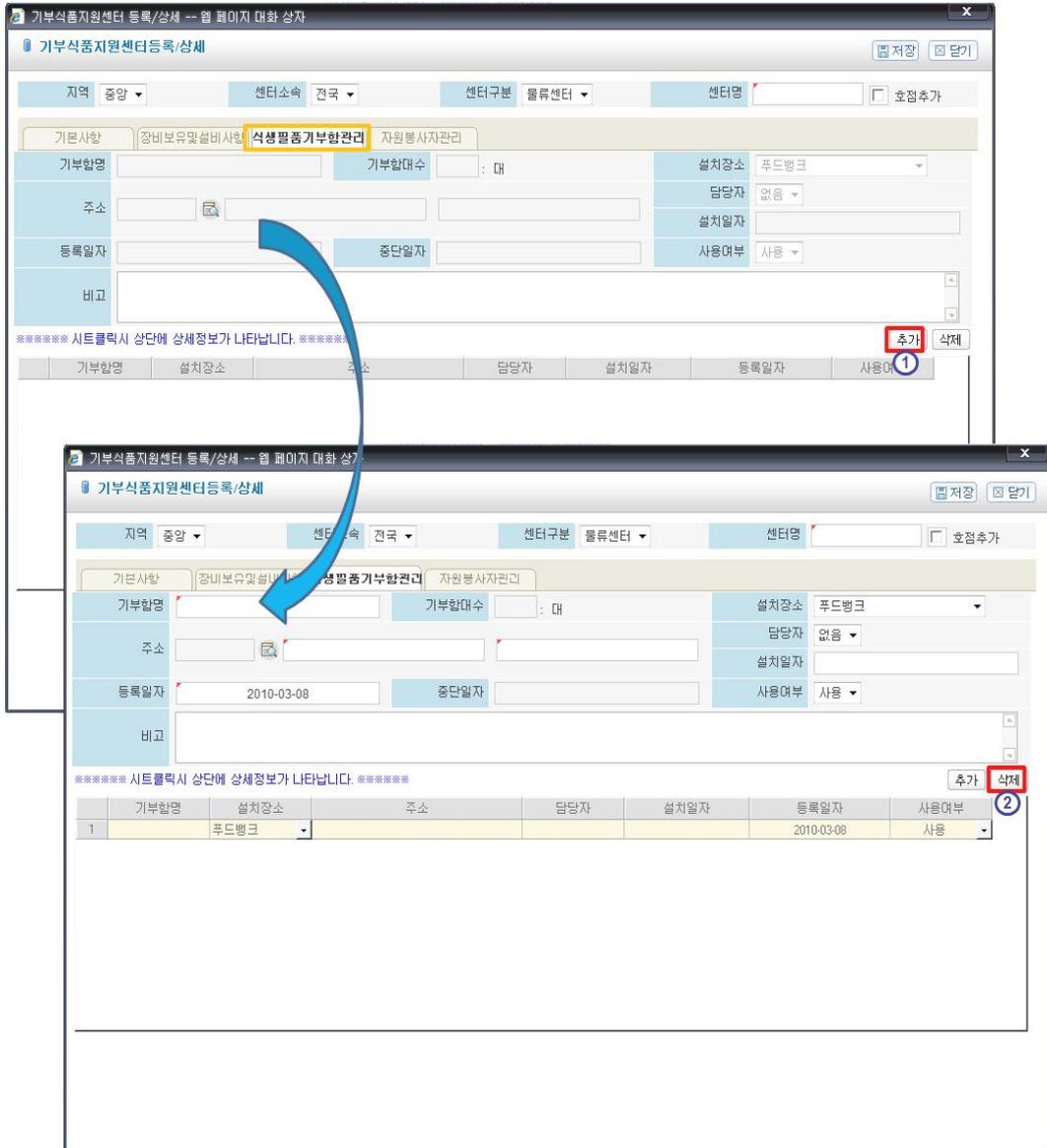
소유구분	건용유무	면적(평)	저온설비유무	계약일	만료일	사	1	2	추가	삭제
1	겸용	미설비				사용			1	2

5 PC

소유구분	건용유무	사양구분	인터넷 사용유무	구입일	추가	삭제
1	겸용		미사용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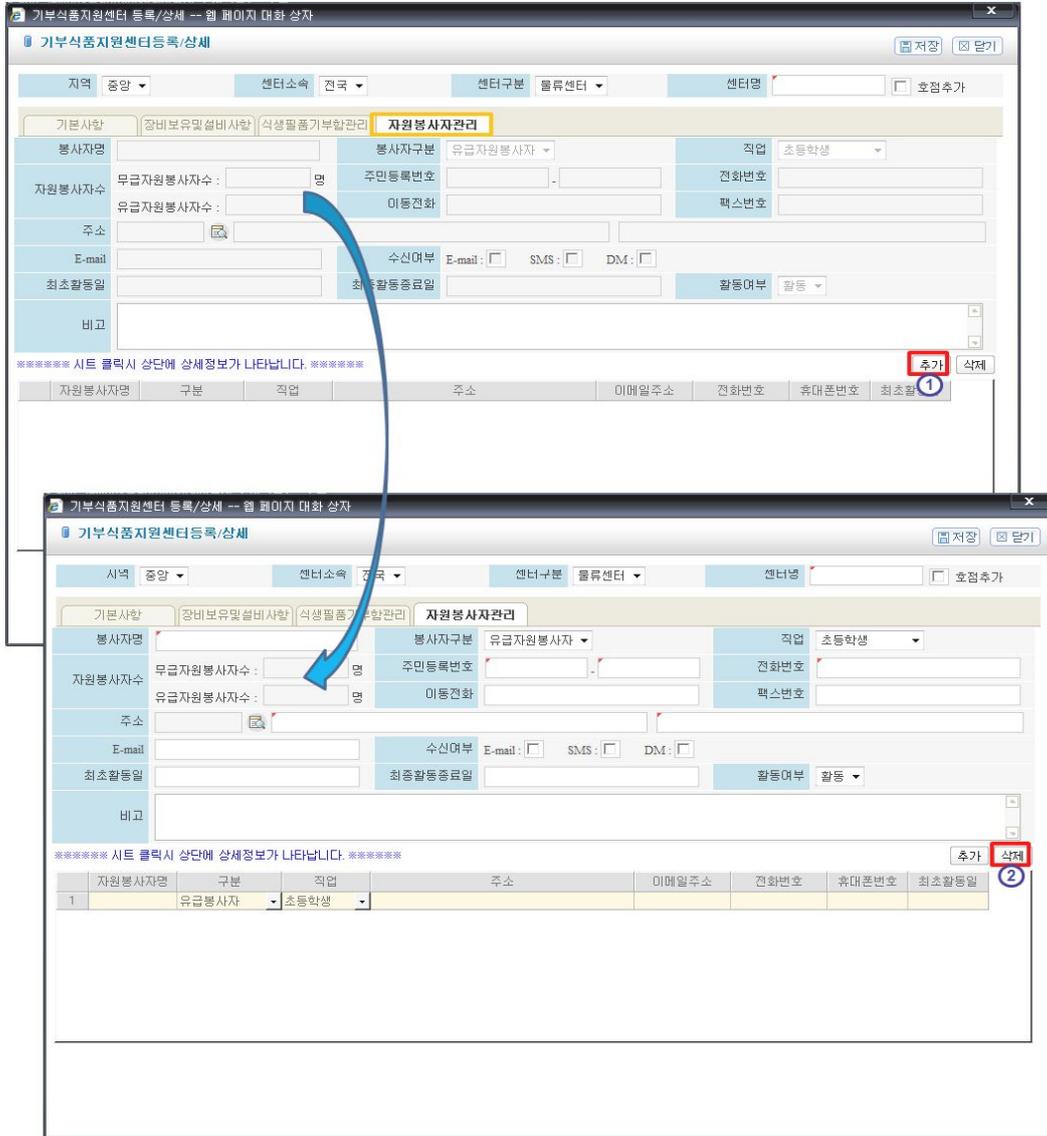
<장비보유 및 설비현황>

- 장비보유 및 설비현황 탭 을 선택합니다.
- ① 차량, 냉장냉동고, 창고, PC 시트의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과 같이 시트가 생성되며, 각 필요사항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냉장고, 창고, PC는 전부 개별 관리 합니다.)
- ② 차량, 냉장냉동고, 창고, PC 시트의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등록된 차량, 냉장냉동고, 창고, PC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입력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해야 저장이 됩니다.



<식생필품기부함관리>

- 식생필품 기부함관리 탭을 선택합니다.
- 시트내역을 선택할 경우 상단의 입력박스에 상세내역이 보이게 됩니다.
- ①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시트의 로우가 생성되며, 그림과 같이 입력 할 수 없었던 기부함 입력사항에 대해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상단의 입력박스를 통해 등록 및 수정을 입력합니다.)
- ②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등록된 기부함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입력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해야 저장이 됩니다.



<자원봉사자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 탭을 선택합니다.
- 시트내역을 선택할 경우 상단의 입력박스에 상세내역이 보이게 됩니다.
- 자원봉사자의 봉사내역은 별도의 페이지에서 기록합니다.
- ①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시트의 로우가 생성되며, 그림과 같이 입력 할 수 없었던 자원봉사자 입력사항에 대해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상단의 입력 박스를 통해 등록 및 수정을 입력합니다.)
- ②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입력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해야 저장이 됩니다.

5. 통계자료 (ST)

5.1 기부물품자료현황

5.1.1 기부물품접수통계

식생활품 기부함 통계를 전국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계자료 >기부식품지원센터통계자료 >기부물품접수통계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물품접수통계』 화면이 나타납니다.

- 지역 전체 선택 시 전국 조회 됩니다.
-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하단에 기부물품접수통계 조회 됩니다.
- 조회된 기부물품접수통계 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조건을 입력하고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화면이 종료되고 처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5.1.2 기부물품제공통계

기부물품 제공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계자료 >기부물품자료현황 >기부물품제공통계 메뉴를 선택하면 『기부물품제공 통계』 화면이 나타납니다.

구분	지역	총 건수	총 인원	총 금액	총 영수금액	단체이용자					단체이용자				
						기타이용시설					노인시설				
						건수	인원	금액	영수금액	백분율	건수	인원	금액	영수금액	백분율
1	총계	15	43	501	27	1	0	27.8	27		1	20	22.0	0	
2	광주	1	0	28	27	1	0	27.8	27	100%					
3	대전	4	25	117	0						1	20	22.0	0	25%
4	제주	2	11	75	0										
5	충북	1	2	52	0										
6	경기	3	1	151	0										
7	서울	4	4	78	0										

- 지역 전체 선택 시 전국 조회 됩니다.
-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하단에 기부물품배분 통계가 조회 됩니다.
- 조회된 기부물품배분통계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 버튼을 선택 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인쇄] 버튼을 선택하면 조건을 입력하고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화면이 종료되고 처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6. 기탁의뢰관리(HC)

6.1 기탁의뢰관리

6.1.1 기업기탁검수입력(기초)

- 광역으로부터 이관받은 메뉴를 기초센터 담당자가 실물을 검수 한 후 검수 입력을 하는 메뉴입니다

체크박스	기탁기업	기부일자 (최초 입력일자)	품명	총 수량	표준단가 합계	장부단가 합계	수량처 (기업물류센터)	검수구분	검수수량
<input type="checkbox"/>	CJ 나눔재단 대전광역푸드뱅크	2012-10-22	리엔 중건성기획1500ml	5	90650	0	기초승인	4	
<input type="checkbox"/>	이푸드시스템 대전광역푸드뱅크	2012-10-29	모스람백열구60W*3입 외 1건	20	342830	0	승인완료	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CJ 나눔재단 대전광역푸드뱅크	2012-10-25	HT)손뜨개류선 외 6건	11	611215	569914	접수	0	

- ① 기탁리스트 중에서 항목을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 ② [엑셀] 버튼을 누르면 기탁자료가 엑셀로 다운로드 됩니다.
- ③ 날짜 또는 품명을 클릭하면 세부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탁리스트에서 상세리스트를 눌러 직접 검수입력을 하는 메뉴입니다

품명	수량	표준단가	장부단가	수량처 (기업물류센터)	검수구분	검수수량	폐기수량	폐기사유	폐기방법	폐기자부담금	폐기탁자부담금
HT)손뜨개류선	1	11500.0	10900.0		검수	0	0	=선택=	=선택=	0	0
WR)글로리리그방용PK	1	12600.0	12000.0		검수	1	0	=선택=	=선택=	0	0
와이드러그PK(150*200)	1	25650.0	25600.8		검수	0	0	=선택=	=선택=	0	0
T/R시니어투어WH	2	47036.0	47000.0		검수	1	1	=선택=	=선택=	0	0
스타 밀조제(그린)	2	104160.0	95000.0		검수	2	0	외관손상	=선택=	0	0
TP)압리클러브(10.5)	2	90695.0	85456.0		검수	2	0	유동기화결과	=선택=	0	0
HB원순음클러브(북미)	2	36842.0	33250.7		검수	2	0	내용물부족	=선택=	0	0
								기타해분고관	=선택=	0	0
								보관위급부주의	=선택=	0	0
								데이터이전때 따른 폐기	=선택=	0	0

- ① 물품을 확인 한 후 검수수량을 입력합니다.
- ② 물품의 폐기사유 발생시 폐기 사유를 셀렉트 박스를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 ③ [저장] 버튼을 눌러 확인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체크박스	기탁기업	기부일자 (최초 입력일자)	품명	총 수량	표준단가 합계	장부단가 합계	수량처 (기업물류센터)	검수구분	검수수량
<input type="checkbox"/>	CJ 나눔재단 대진광역푸드뱅크	2012-10-22	리엔 중건상기척1500ml	5	90650	0		승인완료	4
<input type="checkbox"/>	이루드시스템 대진광역푸드뱅크	2012-10-29	오스람백열구60W*9입 외 1건	20	342830	0		승인완료	20
<input type="checkbox"/>	CJ 나눔재단 대진광역푸드뱅크	2012-10-25	HT)손트게쿠션 외 6 건	11	611215	568914		기초승인	10

- ① 물품 최초 접수시 “접수” 상태에서 검수확인 후 저장시 “기초승인 상태로 변경됩니다.
- ② 광역센터에서 승인시 “승인완료”로 표기됩니다.

체크박스	기탁기업	기부일자 (최초 입력일자)	품명	총 수량	표준단가 합계	장부단가 합계	수량처 (기업물류센터)	검수구분	검수수량
<input type="checkbox"/>	CJ 나눔재단 대진광역푸드뱅크	2012-10-22	리엔 중건상기척1500ml	5	90650	0		승인완료	4
<input type="checkbox"/>	이루드시스템 대진광역푸드뱅크	2012-10-29	오스람백열구60W*9입 외 1 건	20	342830	0		승인완료	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CJ 나눔재단 대진광역푸드뱅크	2012-10-25	HT)손트게쿠션 외 6 건	11	611215	568914		기초승인	10

218,239,228.85의 기탁자료검수(CJ+나눔재단-20121025).xls(7.00KB)을(를)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열기(O) 저장(S) 취소(C) x

- 유통업체의 자료와 같이 다품목 대량 기탁접수 항목의 경우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기탁검수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① 다운로드할 목록을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 ② [엑셀]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저장] 버튼을 이용하여 디스크에 저장 후 [열기] 버튼으로 파일을 엽니다.

기탁기업	상품바코드	상품명	무게(g)	수량	표준단가	장부단가	수량처 (기업물류센터)	유통기한	검수구분	검수수량	폐기수량	폐기사유	폐기방법
CJ 나눔재단	8806363014690	스타 팀조개(그린)	0	5	104160.0	95000.0				5			
CJ 나눔재단	8809263070445	TPX합파클러브(10.5)	0	5	90685.0	85456.0				5			

- ① 검수수량을 엑셀파일로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III. 기 타

기탁리스트 기탁자료검수승인

*한미 화면을 업로드 하신 엑셀 데이터를 확인, 수정 가능한 화면으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 건수 : 2건
오른쪽 상단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저장에 완료 됩니다.

기탁기업	품명	수량	표준단가	광부단가	유동기한	수량처 (기업물류센터)	검수수량	폐기수량	폐기사유	폐기방법	자부담금	기탁자부담금
CJ 나눔재 단	스타 필조끼(그린)	5	104160.0	95000.0			5	0	=선택=	=선택=	0	0
CJ 나눔재 단	TPX왕피클리브 (10.5)	5	90695.0	85496.0			5	0	=선택=	=선택=	0	0

- ① 저장된 엑셀화일을 업로드하면 임시화면에 전송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저장 됩니다.



7. 업무지원게시판(BS)

7.1 업무지원게시판

7.1.1 업무지원게시판

업무지원게시판은 FMS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관련 질의를 하고 FMS담당자는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업무지원 게시판입니다.

- 업무지원게시판>업무지원게시판>업무지원게시판을 선택하면 업무지원게시판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NO.	제목	관리요청일	작성자	작성일	상태
4	업무지원게시판 테스트 입력입니다.	2012-11-09	전국푸드뱅크	2012-11-09	처리중
3	관리담당자 교육 및 테스트 자료입니다.		전국푸드뱅크	2012-11-09	등록
2	미스본입니다.	20121031	서울시광역푸드뱅크	2012-10-29	등록
1	테스트용 POS 프로그램		전국푸드뱅크	2012-10-22	등록

- ① [업무지원게시판] 메뉴를 클릭합니다.
- ② 세부메뉴에 [업무지원게시판] 메뉴를 클릭합니다.
- ③ 업무지원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들이 표시됩니다.
- ④ [작성] 버튼을 누르면 게시물 작성 메뉴로 이동됩니다.
- ⑤ 처리상태는 '등록', '등록확인', '처리중', '처리완료' 네 단계로 나뉘어 지킵니다. 처리상태 입력은 중앙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업무지원게시판>업무지원게시판>업무지원게시판>작성 버튼을 선택하면 FMS 업무지원에 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무지원게시판

[*] 표시 항목은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제목* FMS 기능개선 및 오류처리에 관련된 소개자료(ppt) 파일입니다. ①

작성자 전국푸드뱅크 ②

완료요청일자 2012-11-09 ③ (09-01처럼 입력하세요)

연락처 010-0000-0000 ④

이메일 0000@naver.com ⑤

메뉴명 메뉴그룹선택 ⑥

내용 FMS 기능개선 및 오류처리에 관련된 소개자료 (ppt) 파일입니다.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⑦

첨부파일1 [찾아보기...] [첨부파일1 다운로드] ⑧

첨부파일2 [찾아보기...]

첨부파일3 [찾아보기...]

목록 ⑨

게시물 수정

- ① 제목을 입력합니다. (필수입력 항목)
- ② 작성자는 로그인된 계정으로 자동입력됩니다.
- ③ 완료요청일자는 처리가 완료되기를 원하는 날짜를 달력에서 선택합니다.
- ④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⑤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 ⑥ 1차 메뉴는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메뉴는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⑦ 세부내용을 입력합니다.
- ⑧ 첨부화일을 3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⑨ [목록] 버튼을 누르면 게시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2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기부식품제공사업 실태점검표					
기본 사항	푸드뱅크(마켓) 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FAX	담당자/H·P)
	점검사항				
구분	문항	점검결과	점검안내		
해당 법률 및 사업 안내 이행 여부	1. 기부식품 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 안전관리				
	○ 기부식품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및 결과 공개 ○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준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에게 직접경비(운반비용, 포장비용)를 받을 수는 있으나 국고 및 지방비를 통해 적절한 운영비를 받고 있으면 무상제공을 준수하여야 함 		
	○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유통기한·위생관리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여부 ○ 사업장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시설·설비 기준 ○ 식품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발생시 대책 비상연락처 비치 등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2. 기부식품 제공사업 공정성 제고				
	○ 기부식품 배분 과정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 적절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사업과 관련 없는 이용자에게 80/100 이상 (금액기준)을 제공 - 일부 편중배분, 회원단체 배분, 종교적 배분 등 이해관계 불가 ○ 기부식품 이용자 배분 확인 		
	○ 기부식품 이용자 선정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등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사업 성과 관리	○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기부행사, 기부자 및 이용자 발굴 성과 ○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 실시 여부 		

2. 관련 법령

[일부개정 2011.4.28 법률 제10606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제1항 단서의 직접 경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 ②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

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⑧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28.]

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7918호, 2006.3.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 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0> 까지 생략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0606호, 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4.12.9 대통령령 제25834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제4조(신고의 기준)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중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7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의2에서 이동 <2014.8.6.>]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9.]

부 칙 <제19690호, 2006.9.22.>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 <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834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 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제4조제1항관련)

1. 보관창고

- 가.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 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제4조제2항관련)

1. 보관창고

기부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4.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 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2호			
1)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을 보관·작성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2호	300	3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3호	300	300	300

[타법개정 2015.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4.12.12.>

1. 삭제 <2014.12.12.>
2. 사업계획서[영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삭제 <2014.12.1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4.12.1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철회·폐업신고 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회·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12.12.>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 철회·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의 서식: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부 칙 <제369호, 2006.9.25.>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4호, 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6호, 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3호, 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3.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주소록

■ 총 괄

○ 설치단위별

구 분	계	푸드뱅크			푸드마켓	
		소 계	전국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개 소	435	435	1	17	291	126

<기초푸드뱅크> : 291개소

서울 25, 부산 19, 대구 12, 인천 10, 광주 15, 대전 8, 울산 6, 세종1
경기 53, 강원 19, 충북 23, 충남 20, 전북 15, 전남 24, 경북 19, 경남 19,
제주 3

<기초푸드마켓> : 126개소

서울 32, 부산12, 대구7, 인천14, 광주3, 대전8, 울산2, 세종1,
경기 17, 강원 1, 충북 5, 충남 6, 전북 5, 전남 3, 경북 4, 경남 4, 제주 2

○ 운영주체별

<푸드뱅크, 푸드마켓>

(전국푸드뱅크 제외)

구 분	계	사회복지 법인	종교 법인	사단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지자체	자원봉사 센터	개인	기타
개 소	434	231	37	47	35	6	12	4	22	40
(%)	(100)	(53.2)	(8.5)	(10.8)	(8.1)	(1.4)	(2.8)	(0.9)	(5)	(9.3)

■ 세부현황

<푸드뱅크>

(2014.12월 말 기준)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전국	푸드뱅크	전국푸드뱅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02)2077-3983~6	
	중앙물류센터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02-1 기부식품제공 중앙물류센터	042)546-1556~7	
서울 (26개소)	광역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황용규	도봉구 마들로 13길 70	02)905-1377
	물류센터		황용규	도봉구 마들로 13길 70	905-1338
	강남구	강남구푸드뱅크	윤재송	강남구 개포로 605 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1층	3412-1377
	강동구	강동구푸드뱅크	임정백	강동구 동남로926	471-1377
	강북구	강북구푸드뱅크	박남구	강북구 삼각산로 119	991-1377
	강서구	강서구푸드뱅크	이철우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1층	2663-1377
	관악구	관악구푸드뱅크	김근상	관악구 신림로58길 13	872-1377
	광진구	광진구푸드뱅크	장영심	광진구 군자로 34	3436-4317
	구로구	구로구푸드뱅크	이성	구로구 구로동로50길 10	3283-1377
	금천구	금천구푸드뱅크	유영학	금하로 29길 36	893-1377
	노원구	노원구푸드뱅크	탁무권	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지하1층	933-1377
	도봉구	도봉구푸드뱅크	최영대	도봉구 덕릉로 329	907-1377
	동대문구	동대문구푸드뱅크	심재권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1층	2246-0036
	동작구	동작기초푸드뱅크	김택진	동작구 사당로 215 서림빌딩 204호	817-1377
	마포구	마포행복나눔기초푸드뱅크	박선예	마포구 백범로 227	702-1377
	서대문구	서대문구푸드뱅크	이중명	서대문구 연희로 292	304-1376
	서초구	서초구푸드뱅크	김태순	서초구 바우피로43길	579-1377
	성동구	성동구푸드뱅크	최성자	성동구 청계천로 506	2290-3152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	장영철	성북구 삼양로8가길 32	985-0161
	송파구	송파구푸드뱅크	서지선	송파구 마천로 51길 2	401-1377
	양천구	양천구푸드뱅크	원치민	양천구 신정중앙로 80	2651-1792
	영등포구	영등포구푸드뱅크	정진원	영등포구 도림로 61길 7	846-1377
	용산구	용산구푸드뱅크	한성방	용산구 한강대로 345	703-0129
	은평구	은평구푸드뱅크	이영학	은평구 은평터널로 48	305-1377
	종로구	종로구푸드뱅크	정홍우	종로구 지봉로 86 승인1동 주민센터 4층	762-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정선희	중구 퇴계로 460	2297-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부산 (20개소)	중랑구	중랑구푸드뱅크	양태경	중랑구 봉화산로 56길 22	493-1582
	광역시	부산광역시푸드뱅크	윤종석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051)714-1378
	강서구	강서구푸드뱅크	최돈오	강서구 명지도 순아강변길5 (낙동복지관)	271-0560
	금정구	금정구푸드뱅크	박혜영	금정구 중앙대로 2349번길 3	508-1998
		금정구사회복지동행푸드뱅크	정은호	금정구 금정로 221, 은성빌딩 4층	582-3253
	기장군	기장군푸드뱅크	이교승	기장군 차성로216번길 12	724-3453
	남구	남구푸드뱅크	윤성희	남구 동제당로 258	647-3655
	동구	동구푸드뱅크	박주연	동구 안창로 57 동구종합사회복지관	633-3367
	동래구	동래구푸드뱅크	권경동	동래구 시실로 107번길 151	531-2460
	진구	진구푸드뱅크	정은우	부산진구 당감서로 16 당감종합사회복지관	896-2320
	북구	북구푸드뱅크	김태열	북구 덕천로 74	331-4674
	사상구	사상구푸드뱅크	배소양	사상구 가야대로 187	312-0675
	사하구	사하구푸드뱅크	김맹자	사하구 다송로 59번길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서구	서구푸드뱅크	김미애	서구 암남동 장군산로 103번길 6	241-1133
	수영구	수영구푸드뱅크	구춘희	수영구 금련로 43번길 54	755-3367
	연제구	연제구푸드뱅크2호점	최옥동	연제구 연산4동 1247번지	868-6114
		연제구푸드뱅크	김순이	연제구 마곡천로 29-8	863-8360
	영도구	영도구푸드뱅크	김영신	영도구 상리로 63-16	404-5061
		러브영도푸드뱅크	황희수	영도구 절영로 121-1	418-7095
	중구	중구푸드뱅크	신인미	중구 망양로 309	464-3137
해운대구	해운대구푸드뱅크	정영희	해운대구 재반로 12번길 16	782-5005	
광역시	대구광역시푸드뱅크	안의중	남구 대덕로 181	053)474-1377	
대구 (13개소)	달서구	상록수푸드뱅크	김후남	달서구 문화회관3길 25	716-6123
		달서구본동푸드뱅크	박용찬	달서구 구마로 14남길	639-1377
		달서구성서푸드뱅크	김성수	달서구 신당로 56	583-1284
	달성군	달성군푸드뱅크	송정준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9	616-1376
	동구	동구동촌푸드뱅크	김순애	동구 입석로 5	986-1377
		동구진명푸드뱅크	김남형	동구 아양로 239	746-1377
	북구	북구산격푸드뱅크	김형철	북구 연암로 183	381-9193
		북구선린푸드뱅크	유정순	관음동로9길 10-25	323-2297
	수성구	수성구동대구푸드뱅크	김언성	수성구 만촌로 93	753-7775
		수성구지산푸드뱅크	정병철	수성구 용학로 325	781-5156
수성구청곡푸드뱅크		강영신	수성구 노변공원로 49-1	794-1377	

Ⅲ. 기 타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인천 (11개소)	중구	중구푸드뱅크	신상운	중구 남산로 1길 78	254-1388
	광역시	인천광역시푸드뱅크	한창원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8, 503	032)891-1377
	강화군	강화군푸드뱅크	강광하	강화읍 향나무길 22번길 12	932-1378
	계양구	계양구푸드뱅크	이준모	계양구 계양산로 91	555-1377
	남구	남구푸드뱅크	이재만	남구 매소홀로 418번길 14-57	861-1377
	남동구	남동구푸드뱅크	최병래	남동구 구월로 345	469-1377
	동구	동구푸드뱅크	김도진	동구 화수로 66	763-1377
	부평구	부평구푸드뱅크	고성란	부평구 평천로 447	519-1377
	서구	서구태회푸드뱅크	양미희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	564-1377
		서구푸드뱅크	최윤형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	574-1377
	연수구	연수구푸드뱅크	이상운	연수구 원인재로 315	818-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박종실	중구 송학로 40	761-1399	
광주 (16개소)	광역시	광주광역시푸드뱅크	방철호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2	062)351-2114
	광산구	광산구송광푸드뱅크	박준현	광산구 우산로 17	945-1377
		광산구만나푸드뱅크	김선구	광산구 산정로 27	941-1377
		광산구청지푸드뱅크	홍요한	광산구 송도로 143 대덕1차 상가1층	941-8209
	남구	남구푸드뱅크	이선미	남구 용대로 91	676-5087
		남구희망푸드뱅크	김영자	남구 진다리로 31번길 13	653-9313
	동구	동구푸드뱅크	배용태	동구 천변좌로 656	234-1377
	북구	북구푸드뱅크	정진	북구 군왕로 207번길 6	266-1377
		북구두암푸드뱅크	이영길	북구 삼정로 7	266-8183
		북구오치푸드뱅크	신창수	북구 서하로 194번길 6	574-1377
	북구	북구사랑나눔푸드뱅크	안현식	북구 풍동길 20	512-1125
		북구섬기고나눔푸드뱅크	박임선	북구 북문대로 70	524-1377
		북구행복나눔푸드뱅크	김종석	북구 당피로 12	269-1377
	서구	서구푸드뱅크	이홍교	서구 운천로 32번길 23	375-1377
		서구쌍촌푸드뱅크	김천수	서구 쌍학로 47	384-1377
		서구시영푸드뱅크	남국희	서구 화장로 87-1	371-1377
대전 (9개소)	광역시	대전광역시푸드뱅크	곽영수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5호)	042)525-1378
	대덕구	대덕구푸드뱅크	김익자	대덕구 신탄진로 101	627-6800
	동구	동구푸드뱅크	고철영	동구 동대전로 735 201호	273-1377
		동구나눔과기쁨푸드뱅크	조안순	동구 중앙로 193번길 90 1층	252-9149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울산 (7개소)	서구	서구푸드뱅크	박상숙	서구 오량4길 61	585-8875
	유성구	유성구푸드뱅크	김영미	유성구 봉산로 45	934-6338
		대전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푸드뱅크)	윤여창	유성구 노은동로 33 농수산물도매 3문 경사로 옆	822-7986
	중구	중구푸드뱅크	이경화	중구 선화로 43번길 13	255-2278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푸드뱅크)	배현숙	중구 문창로 39	242-2700
	광역시	울산광역시푸드뱅크	유인숙	울산시 중구 염포로 85 (남외동 동천체육관내)	052)285-1378
울산 (7개소)	남구	남구푸드뱅크	송은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30번길 17	274-1277
		남구나눔푸드뱅크	정근두	남구 봉월로 50번길 45	257-1377
	울주군	울주군푸드뱅크	신장열	울산 남구 문수로 382(옥동 156-3) 울주군청 별관5층	261-1377
	동구	동구푸드뱅크	권명호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진성8길 91 (바드래문화관 3층)	209-3974
	북구	북구푸드뱅크	박천동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6	241-8642
	중구	중구아름다운푸드뱅크	이윤구	중구 반구동 442-2번지	292-1365
세종 (2개소)	광역시	세종광역시푸드뱅크	정태춘	조치원5길 30	044)868-1311
	조치원읍	세종사랑푸드뱅크	정태춘	조치원5길 30	868-1311
경기 (54개소)	광역시	경기도광역시푸드뱅크	이경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1 89-5번지 6층	070-8666-6114
			이경학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48-1번지	031)213-8557
	가평군	가평푸드뱅크	이상근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화로 462 3층	070-8847-2436
	고양시	고양시문촌7푸드뱅크	심재경	일산동구 장백로 61	031)905-3400
			윤영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916-4071
			김신실	일산서구 주엽로 156 문촌마을 9단지 내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917-0202
	과천시	과천시푸드뱅크	정성채	관악산길 194	02)502-2015
	광명시	광명시푸드뱅크	조승철	소하로 88, 601호 (소하동, 청학프라자)	02)805-1377
			유환식	광삼로 9 1층	031)2619-1370
	광주시	광주시중앙푸드뱅크	소양호	고블로 88	768-1925
			박병근	역동 27-12 한솔빌딩 3층	8028-8906
	구리시	구리사회적기업푸드뱅크	김동준	동구릉로 460번길 28	569-6696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구리시푸드뱅크	최길수	별말로 129번길 50	556-8100
군포시	군포시푸드뱅크	권태진	오금로 102	397-2054
김포시	김포시푸드뱅크	곽효선	김포 북변중로 65번길 4-8	996-1377
남양주시	남양주시나눔푸드뱅크	서경춘	경춘로 990번길 9-8	564-1377
동두천시	동두천시천사푸드뱅크	이종숙	동두천시 광암로 6번길2	564-1377
부천시	부천시행복한동행푸드뱅크	이명희	소사구 하우로 315-1	032)612-0124
	부천시푸드뱅크	홍선경	원미구 계남로 125번길 한라마일관리소2층	326-1477
성남시	성남시푸드뱅크	서덕석	중원구 성남대로 1151번길	031)757-1377
	성남시청솔푸드뱅크	김월도	분당구 미금로 246	714-6333
수원시	수원시장안푸드뱅크	이관호	장안구 장안로 63번길 8	271-1377
	수원시푸드뱅크	강근수	팔달구 창릉대로 210번길 13	254-1378
	수원시권선푸드뱅크	정종학	권선구 효탄로 24-17 태영아이원 102호	293-0900
시흥시	시흥시목감푸드뱅크	강점숙	목감초동길 45	403-0110
	시흥시정왕푸드뱅크	김주석	봉우재로 23-26 1층	434-1379
안산시	안산시광림푸드뱅크	민경보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33	487-1377
	안산시살롬푸드뱅크	조병춘	상록구 석호로3길 9	408-5942
	안산시나눔과기쁨푸드뱅크	라용주	상록구 안산대학로 36 안산신성교회(일동)	406-7767
안성시	서안성푸드뱅크	박면호	공도읍 진사길 79-17	652-5085
	안성시동부푸드뱅크	김철희	죽산면 죽주로 292-22	070-7788-1377
	안성시푸드뱅크	이정찬	중앙로 451번길 11	031)675-7676
안양시	안양시푸드뱅크	강은자	동안구 동안로 153 평생학습원2층	386-9957
	안양유쾌한푸드뱅크	안승영	만안구 만안로 271 2층	442-8488
양주시	양주시푸드뱅크	박영주	광적면 가래비길93	837-1377
양평군	양평군푸드뱅크	강동연	양평군 용문역길67	775-7741
여주시	여주시구세군푸드뱅크	남세광	여주시 도예로 39-11	031)885-1138
	여주시푸드뱅크	이성관	여주시 세종로 319	886-9101
	여주좋은이웃푸드뱅크	박홍원	가남읍 태평2길 13	884-1377
연천군	연천군푸드뱅크	백성국	전곡읍 전곡로 40번길 1	883-1010
오산시	오산시푸드뱅크	김동승	오산로 272번길 23	378-1377
용인시	용인시사랑나눔푸드뱅크	이성근	기흥구 신갈로 84번길 5-17	281-1377
	여럿이함께푸드뱅크	윤상형	마북로 247번길 92	283-0870
의왕시	의왕시푸드뱅크	이원홍	효행로 46	458-3027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의정부시	의정부시푸드뱅크	김상기	호국로 1332번길 13, 창조빌딩1층	837-6114	
	이천시	이천시선양푸드뱅크	곽연석	남천로 51-6	637-1377
		이천시푸드뱅크	윤병성	부발읍 신원로 18 만옥빌딩 3층	634-1377
	파주시	파주시사랑나눔푸드뱅크	김백현	파주읍 봉서리 187-3	949-1377
		파주시희망푸드뱅크	최명성	교하로 914 아이리스빌딩B1F-1호	945-3054
	평택시	평택시송탄푸드뱅크	박진용	송탄로 194	662-2677
		평택시푸드뱅크	장경숙	평택로 149	652-1377
	포천시	포천시푸드뱅크	정일용	중앙로 207번길 23	535-1376
	하남시	하남시푸드뱅크	서춘성	역말로 71	793-6920
		화성시	동탄사랑나눔푸드뱅크	송민하	병점중앙로 10번길 10
	화성시푸드뱅크	김일용	향남읍 행정중앙로1 30	8059-1677	
강원 (20개소)	광역	강원광역푸드뱅크	김덕성	강릉시 모산로 391번길 15	033)646-0197
	강릉시	강릉시푸드뱅크	이영남	동부시장 3길 22 2층	643-1377
	고성군	고성군푸드뱅크	이한용	간성읍 수성로 141	681-1377
	동해시	동해시푸드뱅크	김복순	봉수로 48	535-2770
	삼척시	삼척시푸드뱅크	한춘복	원당로 2길 72-6	575-0516
	속초시	속초시푸드뱅크	하청수	먹거리길 19	631-8761
	양구군	양구군푸드뱅크	이한용	양구새싹로 7-11	482-1377
	양양군	양양군푸드뱅크	이건필	양양읍 남문로 35	673-1377
	영월군	영월군푸드뱅크	노인국	영월읍 덕포하리 4길 19-5	374-6411
	원주시	원주영강푸드뱅크	서재일	원주시 행구로 215	734-6552
		원주시푸드뱅크	박창호	갈머리2길 31, 101호	747-1347
	인제군	인제군푸드뱅크	김영자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463-1377
	정선군	정선군푸드뱅크	배은하	정선읍 봉양7길 16	562-2922
	춘천시	춘천시푸드뱅크	고옥자	중앙로 104-1	262-3494
	철원군	철원군푸드뱅크	이호균	동송읍 이평로 80-1	455-1846
	태백시	태백시푸드뱅크	이은숙	태백로 398-8	553-8155
	평창군	평창군푸드뱅크	김선형	평창읍 중리 노성로 129	334-1377
	홍천군	홍천군푸드뱅크	김영진	홍천읍 너브내길 121	070-4104-1377
	화천군	화천군푸드뱅크	정근섭	화천읍 상승로8길 15-23	442-1377
	횡성군	횡성군푸드뱅크	이석원	횡성읍 문화체육로 70	342-1104
충북 (24개소)	광역	충북광역푸드뱅크	김창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043)234-1377
	괴산군	괴산군푸드뱅크	김형욱	괴산읍 괴강로 15	834-1377
		괴산나눔과기쁨푸드뱅크	김태운	괴산읍 정용1길 8	832-3197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단양군	단양군푸드뱅크	김종학	단양읍 수변로 83	422-1700
	단양나눔과기쁨푸드뱅크	함기용	대강면 장림리 장림1길 6	070-7756-0193
보은군	보은군기초푸드뱅크	박병준	보은읍 장신2길 11-1	544-1377
영동군	영동군나눔푸드뱅크	박정훈	영동읍 눈어치 1로 71	744-4949
옥천군	옥천군푸드뱅크	이준호	삼양로 8길 9	733-2500
음성군	음성군푸드뱅크	안병호	음성읍 시장로 90 음성새마을금고 4층	873-2882
	음성관성푸드뱅크	서병호	대소면 새미실길 74	070-4337-1270
	음성한울사랑나눔푸드뱅크	이미경	생극면 음성로 1620번길 5	878-4312
제천시	제천시푸드뱅크	곽영길	송문로 7길 5	645-5004
증평군	증평군푸드뱅크	이광훈	증평군 창신로 85	836-6040
진천군	진천푸드뱅크	최성용	진천읍 상산로 42	533-4911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안미선	진천읍 진광로 70 105호	536-0129
청주시	청주시흥덕푸드뱅크	유공순	흥덕구 무심서로 665	267-1377
	청주구세군푸드뱅크	허덕규	상당구 수영로 246번길 32-2	254-1377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이기용	흥덕구 풍산로 25번길 38-7	266-1377
	청주드림푸드뱅크	문영길	상당구 울봉로 176번길 56-10	218-7991
	청주제일사랑무지개푸드뱅크	이건희	상당구 상당로 13번길 15	256-3816
	청원군푸드뱅크	-	청원구 내수읍 청암로 34	218-1377
	청원새영푸드뱅크	박순화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 35	218-2605
	청원대청푸드뱅크	이태순	청원구 문의면 두모1길 13-8	221-7838
충주시푸드뱅크	최성진	주공길 7	855-3000	
광역시	충남광역시푸드뱅크	박수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홍인오피스텔 903호	070-4099-5674
공주시	고은카리타스푸드뱅크	박창순	우성면 역골2길 35-5	041)858-1237
	공주시푸드뱅크	박노근	신기동길 48-8	857-6004
금산군	금산군푸드뱅크	최영진	군북면 일흔이재로 112	752-7942
논산시	논산사랑푸드뱅크	최약선	생피길 14	736-1004
	논산부적푸드뱅크	강운구	부적면 반송2길 5	734-1512
당진시	당진시나눔푸드뱅크	조상원	시청1로 38	357-4343
보령시	보령시푸드뱅크	신경	주공로 50	936-8501
	행복보령푸드뱅크	오치인	보령남로 9 세영타워빌딩 1층 105호	931-8502
부여군	부여나눔푸드뱅크	이기찬	규암면 함송서로 128-3	832-0811~2
서산시	서산시푸드뱅크	이욱	서해로 3456	667-2303~4
서천군	서천군좋은친구푸드뱅크	최재수	서천읍 군사길 1-2	952-1414
아산시	아산시푸드뱅크	이봉석	배방읍 복수로 35	534-1377

충남
(21개소)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전북 (16개소)	예산군	예산군푸드뱅크	박철우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18	334-4804
	천안시	천안시푸드뱅크	유영완	서북구 노태산로 21	907-1377
		천안서부푸드뱅크	염용돈	동남구 태조산길 13-31	070-7547-8109
		충남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푸드뱅크)	김경호	서북구 천안대로 1347	582-1388
	청양군	청양군푸드뱅크	이준희	운곡면 백암동길 37-25	944-1500
	태안군	태안군푸드뱅크	정종국	태안읍 군청2길 2	675-1379
	홍성군	홍성군푸드뱅크	곽정욱	은하면 구성남로 381	041-642-6636
		희망의나눔서해푸드뱅크	김구	홍성읍 대내길 97	041-631-2610
광역시	전북광역시푸드뱅크	최원규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063)224-1861	
고창군	고창군푸드뱅크	박지환	고창읍 모양성로 116-13	561-2350	
	선운푸드뱅크	손형석	전봉준로 88-15	561-1378	
군산시	군산시푸드뱅크	황경호	칠성로 59	461-6556	
김제시	김제시푸드뱅크	권영세	금성로 93	543-1377	
남원시	남원시푸드뱅크	문홍근	노송로 1255-9	635-5252	
무주군	무주군푸드뱅크	오용식	무주읍 단천로 47	322-1370	
부안군	부안군푸드뱅크	장현진	부안읍 행안면 월룡길 5	581-5723	
순창군	순창군푸드뱅크	민선홍	순창읍 옥천로 66	653-9130	
완주군	완주군푸드뱅크	김진왕	봉동읍 봉동로 98	232-1377	
익산시	익산시푸드뱅크	김도진	익산대로 415-7	856-2385	
임실군	임실군푸드뱅크	이종용	관촌면 공덕1길 39	643-6688	
장수군	장수군푸드뱅크	서정일	장수읍 시장로 27-9	351-2792	
전주시	전주시푸드뱅크	조영례	완산구 소대배기로 18-34	222-7383	
정읍시	정읍시푸드뱅크	박진하	수성2로 13-18	533-1916	
진안군	진안군푸드뱅크	최우영	진안읍 거북바위로3길 30	432-9007	
전남 (25개소)	광역시	전남광역시푸드뱅크	노진영	목포시 백년대로 380, 4층	061)285-8945
	강진군	강진군푸드뱅크	김미순	강진읍 초지길 21, 3층	430-3166
	고흥군	고흥군푸드뱅크	김경수	고흥읍 동주공길 9, 2층	832-2500
	곡성군	곡성군푸드뱅크	박병준	곡성읍 읍내19길 8	363-2171
	광양시	광양시푸드뱅크	장화섭	광양읍 성국길 39	762-9894
	구례군	구례군푸드뱅크	최경옥	구례읍 의료원길 7-4	783-1378
	나주시	나주시푸드뱅크	유길원	남산길 45-12	332-8992
	담양군	담양군푸드뱅크	김재성	월산면 월신평길 79-14	381-1376
	목포시	예향참맛푸드뱅크	천남일	해안로173번길 34	242-8980

Ⅲ. 기 타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무안군	무안군푸드뱅크	송미자	일로읍 삼일로 493	283-1888
	보성군	보성군푸드뱅크	김장식	동인길 18-6	852-9845
	순천시	순천시푸드뱅크	허규만	저전길 84	741-3062
	신안군	신안군푸드뱅크	정성덕	압해읍 추섬길 213	271-9635
	여수시	여수시푸드뱅크	임봉춘	여문2로 11-10	652-4242
		여수시쌍봉푸드뱅크	신은숙	학동서4길 58-20	682-1477
	영광군	영광군푸드뱅크	김경옥	영광읍 중앙로4길 7	353-9740
	영암군	영암군푸드뱅크	이삼행	영암읍 새동네길 22-1	471-9933
	완도군	사랑나눔은행푸드뱅크	전민	완도읍 천해진남로 23번길 9	554-1377
	장성군	장성군푸드뱅크	김종인	장성읍 매화1길 8	393-2271
	장흥군	장흥군푸드뱅크	김영순	장흥읍 흥성로 55	864-7896
		푸른푸드뱅크	손영목	안양면 수문용곡로 136	862-1296
	진도군	진도군푸드뱅크	천율곡	진도읍 옥주길 27-1	542-1388
	함평군	함평군푸드뱅크	정경숙	신광면 균유로 442	323-9723
	해남군	해남군푸드뱅크	김대용	해암읍 중앙1로 61	530-5760
	화순군	화순군푸드뱅크	정소향	춘양면 학포로 1303-1	371-1377
	경북 (20개소)	광역시	경북광역시푸드뱅크	양점도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18-4, 2층
경산시		경산시푸드뱅크	김두성	경청로 222길 79	813-1102
경주시		경주시푸드뱅크	김종우	승삼1길 32	054)771-8107
구미시		구미푸드뱅크	김용선	문장로 110	458-0230
김천시		김천시푸드뱅크	오석상	모암길3	439-2191
문경시		문경시푸드뱅크	안희호	시청1길 16	555-2800
상주시		상주시푸드뱅크	이강식	냉림2길 111	532-5688
성주군		성주군푸드뱅크	박승덕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616	932-3551
안동시		안동시푸드뱅크	김윤애	북주 5길 23-17	858-1361
영주시		영주시푸드뱅크	신은주	대학로 130-1	636-0834
영천시		영천시푸드뱅크	이상근	한방로 195-6	335-3633
		영천시푸드뱅크	주경선	언하1길 22-3	333-5733
울진군		울진군푸드뱅크	정은경	후포면 후포삼울로 49-1	788-2111
의성군		의성군푸드뱅크	박철진	의성읍 복원3길 51-6	834-2900
청도군		청도군푸드뱅크	서정효	화양읍 청화로 79-11	373-7575
칠곡군		칠곡군푸드뱅크	이경숙	관문로1길 32 교육문화회관	979-5127
포항시		포항시푸드뱅크	박상홍	북구 흥해읍 대련리 385-6	255-1377
		북지세상내일을여는집 푸드뱅크	문혜정	북구 장성동 삼흥로 35번길	244-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경남 (20개소)	경동푸드뱅크	하광락	남구 오천읍 해병로 347번길 34	291-0191	
	홍해제일푸드뱅크	임중배	북구 홍해읍 한동로 43번길	261-7521	
	광역시	경남광역푸드뱅크	조성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0	055)298-9108
	거제시	거제시푸드뱅크	오정림	고현로2길 42	632-0400
	거창군	거창군푸드뱅크	거창군수	거창읍 아립로 66	940-3872
		거창군푸드뱅크	임규순	마리면 거안로 1029	943-3114
	고성군	고성군푸드뱅크	김종봉	동외로156번길 36	674-2001
	김해시	김해이웃사랑푸드뱅크	박숙자	분성로 376번길 21-10	336-2121
	남해군	남해군푸드뱅크	남해군수	남해읍 망운로 32	860-3807
	밀양시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김상업	가곡동 455	355-7484
	사천시	사천시푸드뱅크	최연순	동금5길 15	831-2533
	양산시	양산시푸드뱅크	전재명	물금읍 오봉10길 8	365-9544
	진주시	진주시푸드뱅크	김법환	진주대로 1087번길 5-4	747-1377
	창녕군	창녕군푸드뱅크	정운주	창녕읍 조산서재골로 7	532-0624
	창원시	마산푸드뱅크	하성자	마산회원구 상곡로 49	231-8017
		진해푸드뱅크	이재영	진해구 진해대로 1101	540-0114
		창원시희망푸드뱅크	이철민	의창구 창의대로 600번길 2	253-1377
	통영시	통영시푸드뱅크	최태식	안개4길 94	646-1377
	하동군	하동군푸드뱅크	박일현	하동읍 청년회관길 13	884-6955
	함안군	함안군푸드뱅크	함안군수	말산로 5	580-2454
함양군	함양푸드뱅크	오충교	함양읍 월명길 12	962-2071	
합천군	합천푸드뱅크	서정환	합천읍 중앙로 33-2	931-2370	
제주 (4개소)	광역시	제주광역푸드뱅크	이동한	제주 제주시 청풍남8길 12-1	064)759-1377
	서귀포시	서귀포시구세군푸드뱅크	손홍수	현청로 6	733-3791
	제주시	제주구세군푸드뱅크	유정훈	광양7길 34	751-1377
		제주북부푸드뱅크	안원식	한림상로 207-9	796-9093

<푸드마켓>

(2015년 2월 현재)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서울 (32개소)	강남구	강남구푸드마켓1호점	박정근 개포로 605 강남장애인문화복지관	02)554-1377
		강남구푸드마켓2호점	박정근 삼성로72길 7	565-0377
	강동구	강동구푸드마켓	김용길 동남로 926	427-1377
	강북구	행복나눔 강북푸드마켓	박남구 삼각산로 119 중앙빌딩 2층	991-1377
	강서구	강서사랑나눔푸드마켓	이철우 공항대로2가길 5, 1층	2635-1377
	관악구	관악구푸드마켓	김근상 신림로58길 13	872-1377
	광진구	광진구푸드마켓	장영심 군자로 34	499-1377
	구로구	구로희망푸드마켓	양대웅 구로동로50길 10	869-1378
	금천구	금천구푸드마켓	유영학 독산로 165-1	3286-1377
	노원구	노원푸드마켓	탁무권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B1층	975-1277
		푸드나눔카페2호점	황용규 공릉동 680 태릉입구역사내	905-1377
	도봉구	도봉푸드마켓	최영대 창동 20 4호선 창동역사 1층	907-1377
	동대문구	동대문구푸드마켓	김대성 천호대로2길 23-9	2246-0036
	동작구	동작푸드마켓	주양곤 사당로 215	817-1377
	마포구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1호점	박선예 월드컵로 235 농수산물시장내 1층	364-1377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2호점	박선예 백범로 227	702-1377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3호점	조철욱 신촌로26길	703-1377
	서대문구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1호점	박선예 독립문로 50	392-1377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2호점	박선예 세검정로 831	1392-1377
	서초구	서포구푸드마켓	김창근 바우피로 43	577-5864
	성동구	성동희망푸드마켓	박선예 왕십리로 28길 10	425-1377
	성북구	성북푸드마켓1호점	유경춘 안암로3길 67 진빌딩 1층	981-1377
		성북푸드마켓2호점	이종명 화랑로 112, 게이또빌딩 1층	765-1377
	송파구	송파구푸드마켓	서지선 마천로 51길 2	2043-1377
	양천구	양천구해누리푸드마켓	최재란 중앙로32길 29 (158-862)	2062-1377
	영등포구	영등포사랑나눔푸드마켓2호점	정진원 버드나루로22길 5, 101호	2632-1377
	용산구	용산사랑나눔푸드마켓	한성방 한강대로 345	703-0129
	은평구	은평푸드마켓	이영학 서우릉로 134-5	359-1377
		푸드나눔카페1호점	황용규 불광동 281 불광역사 내	907-1377
	종로구	종로구이웃사랑나눔푸드마켓	정홍우 지봉로 86, 송인1동주민센터 4층	2148-4102
	중구	행복더하기푸드마켓	정선희 퇴계로 460	2297-1377
	중랑구	중랑구푸드마켓	양태경 봉화산로 56길 22	493-1582
부산 (12개소)	금정구	금정구푸드마켓	김귀경 중앙대로 1992	051)911-1377
	남구	남구동행푸드마켓	이덕순 진남로 102	638-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동래구	등대지기 푸드마켓	권경동	석사북로 59-1	506-1377
	부산진구	부산진구푸드마켓	정은우	중앙대로 882	853-1377
	북구	행복나눔푸드마켓	김태열	의성로 115번길 11	335-8377
	사상구	사상구푸드마켓	송숙희	동주로 6-9	325-1399
	사하구	사하사랑나눔푸드마켓	김맹자	다대로 544, 205호	262-1377
	서구	푸르미&나누미푸드마켓	조생래	구덕로 301번길 5	941-1367
	수영구	함께하는 푸드마켓	구영찬	연수로 249 12-18	756-1925
	영도구	영도구푸드마켓	김영신	태종로 514	405-1377
	중구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신인미	영주동 551-7	463-1388
	해운대구	해운대푸드마켓	정영희	재반로 51	781-1373
	대구 (7개소)	남구	늘해랑 푸드마켓	안의중	봉덕로5길 9
달서구		달서구스마일링푸드마켓	박용찬	송현로 113	636-1377
북구		북구사랑나눔푸드마켓	유정순	칠곡중앙대로91길 5	321-1377
		북구희망나눔푸드마켓	이철상	대구체육관로 28	954-1377
중구		행복한중구푸드마켓	신상윤	남산로 29-1	256-1377
		중구만나푸드마켓	변창식	동덕로 26길 121	257-1377
달성군		행복한 달성푸드마켓	송정준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01-6	588-1375
인천 (14개소)	강화군	강화군푸드마켓	강광하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12	032)934-0808
	계양구	계양구푸드마켓	이준모	계양구 계양대로 126	551-1377
	남구	남구푸드마켓1호점	이재만	남구 경인로 333	875-1377
		남구푸드마켓2호점	신덕수	남구 인주대로 128	889-1377
	남동구	남동구푸드마켓1호점	최병래	남동구 구월로 345	463-1377
		남동구푸드마켓2호점	장자옥 고석현	남동구 백범로 371	431-1377
	동구	동구푸드마켓1호점	김도진	동구 금곡로 81번길 27	773-2377
	부평구	부평구푸드마켓1호점	고성관	부평구 열우물로 96번길 6	426-1377
		부평구푸드마켓2호점	김상현	부평구 경원대로 1367번길 18	511-1377
	서구	서구푸드마켓1호점	이두형	서구 승화로 233	576-1377
		서구푸드마켓2호점	전명구	서구 거북로 124	584-1377
	연수구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이상윤	연수구 비류대로 519번길 30-2	817-1377
		연수구푸드마켓2호점	한종근	연수구 청량로 184번길 17	834-2377
	중구	중구푸드마켓	박종실	중구 홍예문로 77	777-0377
광주 (3개소)	북구	행복나눔푸드마켓북구점	신창수	오치동 969-1	062)264-1377
	서구	행복나눔푸드마켓서구점	김천수	염화로 119	374-1377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광산구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	박춘현	무진대로 212번길 29-27	945-1377
대전 (8개소)	대덕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3호점	김익자	계족로 608번길 15	042)637-1377
	동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2호점	고철영	동대전로 102-1	633-1377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7호점	안승서	동구청로 203번길 1	286-1377
	서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1호점	곽영수	계룡로 367번길 107	488-1370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8호점	김문규	도마5길11	528-5290
	유성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4호점	김영미	봉산로36번길 1	935-1377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6호점	윤여창	계룡로 88번길 50	826-6377
	중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5호점	이경화	보문로 142	042)256-1377
울산 (2개소)	남구	남구나눔푸드마켓	정근두	봉월로50번길 45	052)252-1377
	울주군	울주푸드마켓	송연옥	동부리 253-9	224-1377
세종 (1개)	세종시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정태훈	초치원5길 30	044)868-1311
경기 (17개소)	고양시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심재경	호수로 446번길 55	031)902-1377
	광명시	광명푸드마켓행복바구니	유환식	광삼로 9, 1층	02)2619-1370
	남양주시	남양주시푸드마켓	신영미	진건읍 사릉로 406-1	031)528-1668
		남양주희망나눔동부푸드마켓	최정선	화도읍 마석중앙로 79	591-1062
	부천시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홍선경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오피스텔 106호	032)324-1688
	성남시	성남열린푸드마켓	서덕석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상점 17호	031)756-1378
	수원시	해누리푸드마켓	강근수	팔달구 경수대로 441	238-1378
	시흥시	시흥푸드마켓	김주석	봉우재로 23-26 1층	434-1378
		시흥신천푸드마켓	이복희	신천로 79번길 26	318-1366
	양주시	양주연화푸드마켓	김지열	평화로 1679	861-1377
	의정부시	의정부자비푸드마켓	김상기	경의로 192 화랑빌딩 1층	829-6114
	이천시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형상혁	경충대로2638번길 35	638-1375
	파주시	파주시희망푸드마켓	최명성	교하로 914 아이리스빌딩 107호	949-2215



구 분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일반전화	
강원 (1개소)	평택시	평택푸드마켓2호점	정경호	송탄로 191	664-1377
		평택푸드마켓1호점	장경숙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1층	618-1877
	화성시	화성시행복나눔푸드마켓	이인섭	향남읍 행정중앙1로 30	8059-1677
		화성시나래울푸드마켓	이종길	여울로2길 33-12	8015-7400
원주시	원주시푸드마켓	박창호	갈머리2길 31 원주시사회복지센터1층	033)747-1347	
충북 (5개소)	괴산군	괴산군푸드마켓	김형욱	괴산읍 괴강로 15	043)834-1377
	단양군	단양군푸드마켓	김중학	단양읍 수변로 83	422-1700
	제천시	제천시푸드마켓	곽영길	동명로 50	647-1377
	청주시	청주시푸드마켓	유공순	상당구 남사로 83번길 35	222-9171
	충주시	충주시푸드마켓	최성진	용산로 32-1	855-1377
충남 (6개소)	논산시	논산사랑푸드마켓	최약선	관촌로277번길 23-13	041)736-1377
	보령시	행복보령푸드마켓	오치인	보령남로 9 세영타워빌딩 105호	931-8502
	서천군	서천군좋은친구푸드마켓	최재수	서천읍 군사길 1-2	951-9444
	예산군	예산다다푸드마켓	김동경	예산읍 임성로23번길 6	335-8700
	천안시	천안희망나눔푸드마켓	유영완	서북구 백석로 222	573-1377
	홍성군	홍성서해푸드마켓	곽정욱김구	홍성읍 홍장북로 480	634-7377
전북 (5개소)	고창군	고창군푸드마켓	손형석	전봉준로 96	063)561-1378
	김제시	김제시푸드마켓	권영세	금성로 93	543-1377
	무주군	무주군푸드마켓	오용식	무주읍 단천로 47	322-1370
	익산시	익산시푸드마켓	김도진	중앙로7길 2-9	854-1377
	전주시	전주시행복나눔푸드마켓	조영례	완산구 꽃밭정로 21	286-1377
전남 (3개소)	목포시	햇살나눔푸드마켓1호점	노진영	백년대로 380, 4층	061)283-1477
	여수시	햇살나눔푸드마켓2호점	신은숙	한재로 182, 1층	642-1477
	영광군	영광군푸드마켓	김경옥	영광읍 중앙로4길 7	353-9740
경북 (4개소)	경산시	경산시푸드마켓	김두성	경청로219길 3-2	053)802-1377
	구미시	구미시푸드마켓	김용선	구미중앙로 19	443-1377
	영주시	영주시푸드마켓	신은주	대학로 130-1	637-1378
	포항시	포항시푸드마켓	신인숙	남구 송도로 51	231-1377
경남 (4개소)	김해시	김해시푸드마켓	이성기	금관대로 1205	055)328-1377
	진주시	진주시푸드마켓	김법환	진주대로 1087번길 5-4	747-1377
	창원시	창원시희망푸드마켓	이철민	의창구 창의대로 600번길 2	283-1377
	통영시	통영나눔푸드마켓	최태식	안개로 36-43 국제상가아파트 1층	646-1377
제주 (2개)	제주시	제주사랑나눔푸드마켓	고지환	동광로 85	064)758-1377
	서귀포시	서귀포행복나눔푸드마켓	김보성	서문로 30	733-1388